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관련 업무 수행 절차 연구

저자 | 이쌍철 외

정책연구 IP 2023-01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관련
업무 수행 절차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and Revision Procedure)

국가교육위원회

제 출 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관련 업무 수행 절차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4월 14일

- 주 관 기 관 명 : 한국교육개발원
- 연 구 기 간 : 2023. 02. 21. ~ 2023. 04. 15.
- 주관연구책임자 : 이쌍철(한국교육개발원)
- 참 여 연 구 원
 - 연 구 원 : 김혜진(한국교육개발원)
 - 연 구 원 : 모영민(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운영원 : 전승태(한국교육개발원)

이 연구는 2023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비로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요 약 문 (국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관련 업무 수행 절차 연구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간 교육부 중심, 전문가 및 관료 중심의 하향식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방식은 국민 참여 중심의 상향식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체제로 변화하였다. 특히, 기존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 교육감 협의체, 국민(20만 명 이상 동의)에게 부여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체제를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업무 수행 절차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접수 단계,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단계,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 제시 단계, 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업무 추진을 위한 준비 사항과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업무 추진 절차는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과 관련한 전체적인 과정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UMMARY

(영문요약문)

A Study on the 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and Revision Procedur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brought abou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way the national curriculum was established and changed. The way of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was used to be top-down, centered on the Ministry of Education, experts, and bureaucrats, and it has changed to bottom-up, emphasizing public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to explor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by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in promoting the work of requesting the development and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o prepare specific procedures for such works.

The procedures for requesting the development and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carrying out related tasks. They are also expected to provide materials for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to prepare the overall process for the development and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7
II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전후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식 비교	9
	1. 교육과정 개정 방식 비교를 위한 체계적 접근	11
	2.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나타난 교육과정 개정 방식	12
	3. 종래 교육과정 개정 방식	15
	4. 특징 비교	18
III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한 전문위원회 운영 방안 탐색	23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
	2. 방송통신위원회	27
	3. 국가인권위원회	29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0
	5. 전문위원회 역할 설정에 주는 시사점	35
IV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단 운영 방안 탐색	39
	1. 프랑스	41
	2. 영국	46
	3. 독일	54
	4. 일본	58
	5. 모니터링단 역할 설정에 주는 시사점	64

V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업무 추진을 위한 주요 절차 검토 6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따른 업무 추진 방향 69 2.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역할 탐색 70 3. 업무 추진 절차 및 주요 요소 검토 77 4. 정책 제언: 후속 연구 추진의 필요성 92 	
○ 참고문헌 94	
○ 부록 99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록 1. 유관기관 전문위원회 운영 관계 법령 101 부록 2.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관련 양식 110 	

| 표 목차 |

〈표 II-1〉 교육과정 개정체제의 구성 차원과 세부 요소	11
〈표 II-2〉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 규정 주요 사항	12
〈표 II-3〉 국가교육위원회 발족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변화	18
〈표 III-1〉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29
〈표 III-2〉 유관 기관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종합	33
〈표 IV-1〉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 단계와 주요 내용	48
〈표 IV-2〉 바덴-뷔템베르크 주 교육행정기관	55
〈표 V-1〉 관계 법령에 제시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방향	70
〈표 V-2〉 국가교육위원회 체제에서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	71
〈표 V-3〉 법령에 규정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역할	72

| 그림 목차 |

[그림 I-1]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 업무 추진 절차	5
[그림 I-2]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예시)	6
[그림 II-1]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식	15
[그림 II-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과정	16
[그림 III-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26
[그림 IV-1] 영국 국민의견 수렴 시스템: 국민의견 허브	53
[그림 IV-2] 바덴-뷔템베르크 주의 교육과정 수립 및 개정 절차	56
[그림 IV-3] 학습지도요령 개정 과정	60
[그림 V-1]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업무 추진 방향	69
[그림 V-2]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관련 기구 의견 성격 종합	76
[그림 V-3] 모니터링단 의견 수렴 절차 및 지원조직	87

서론

❶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❷ 연구 내용	5
❸ 연구 방법	7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부족 문제는 한국 교육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 간의 교육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기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기조는 크게 변화하였다. 같은 정권 내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때로는 장관이 교체됨에 따라 정책 내용과 방향이 변화하는 등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그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정책결정 방식에 있어서도 소수의 전문가와 관료 중심으로 추진되는 교육정책수립 및 집행 방식은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민주성 담보 부족과 과도한 관료주의를 고착화시킨다는 문제제기도 지적되어 왔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 참여 요구는 높아졌지만, 그 간의 교육행정체제는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였으며, 관료주의로 인해 교육의 논리가 아닌 행정의 논리에 치우친 행정 편의 주의적 정책 추진, 과도한 성과 및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김용, 2012; 김용일, 2016; 황준성 외, 2017).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2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이후 대선과정에서의 교육 분야 주요 공약으로 출몰 제시되었다¹⁾. 그리고 오랜 논의 끝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7.20. 제정), 지난 2022년 9월 27일 공식 출범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법 제정 이유를 통해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 비전 없이 5년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결정이 교육현장과 괴리되고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국민 여론이 60퍼센트에 이르고 있고, 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1) 2002년 이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회창(‘02,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 정동영(‘07,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 / 문재인(‘12, 국가교육위원회), 박근혜(‘12, 국가미래교육위원회) / 문재인(‘17, 국가교육위원회), 홍준표(‘17, 국가교육위원회), 안철수(‘17, 국가교육위원회), 심상정(‘17, 교육미래위원회), 유승민(‘17, 미래교육위원회)”(교육부, 2021: p.1 원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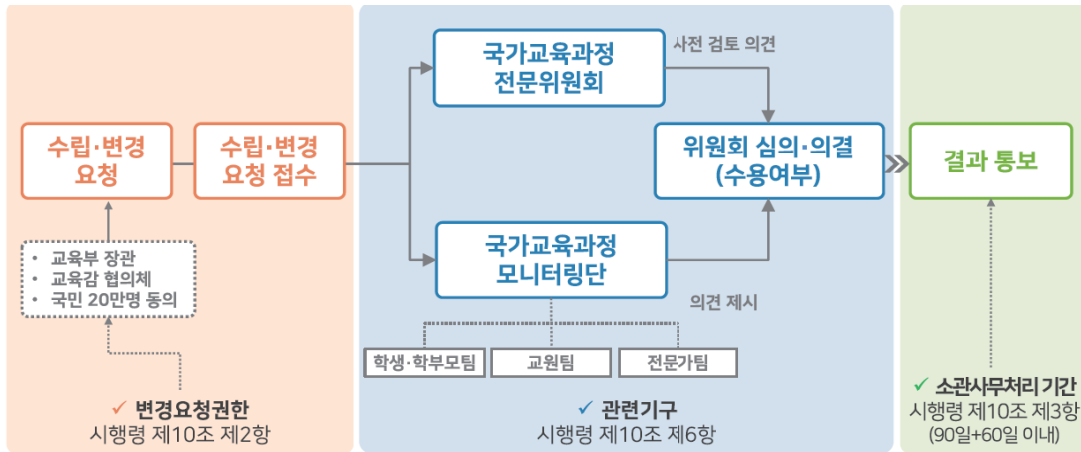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²⁾을 밝히고 있다.

법제정 이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 중 한 가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교육관련 소관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하향식 정책 결정 방식을 벗어나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국민 참여형, 상향식 정책 추진을 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듯이 국가교육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국민 참여적 요소를 법령 곳곳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 제16조 제1항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과 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법령에 제시된 국민 참여적 요소를 반영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 마련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집행의 경험은 풍부하지 않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소관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령에 제시된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해 연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으며,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 국민(20만 명 이상 동의)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0조는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및 변경의 기본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10조 제6항에는 위원회가 교육과정 수립과 변경에 관해 심의·의결할 때에는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 ([그림 I-1] 참고),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주체와 방법,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통한 의견 수렴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과정 수립·변경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 기구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법제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2022.07.20.)/제정·개정 이유(2023.1.25. 인출) 원용.



[그림 I-1]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 업무 추진 절차

2 연구 내용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요청이 접수 되었을 때 이러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등)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새로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시·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인 경우**

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가교육위원회 체제에서의 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의 특징

- 종래의 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에 비춰 국가교육위원회 체제에서의 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가 가지는 특징과 의미에 대한 분석

■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 처리를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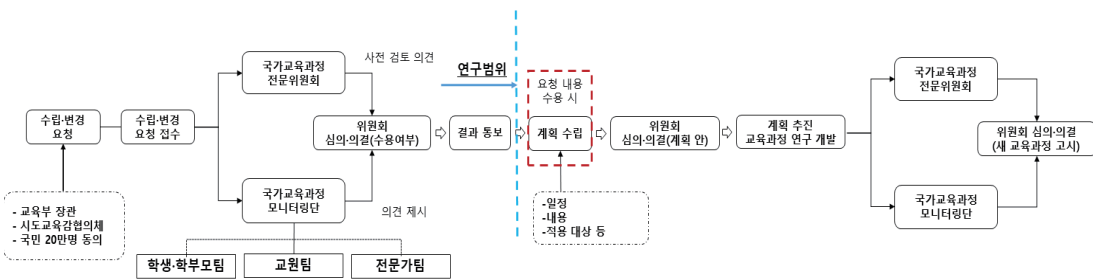
- 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 수렴 주체
- 추진 주체 및 조사 지원
- 의견 수렴 방법 등

■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 처리를 위한 전문위원회 운영 방안

- 전문위원회 역할
- 회의 운영 및 의견 수렴 방법 등

※ 연구 범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관계 법령을 토대로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절차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I-2]와 같다. 본 연구는 단기 과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과정 중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에 관해 위원회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과정까지를 범위로 한다.



[그림 I-2]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예시)

3 연구 방법

■ 관계 법령 및 문헌 분석

- 교육과정 개정 체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 분석

■ 국내 유사 사례 분석: 합의제 행정기관

- 목적: 전문위원회 기능 및 운영 방안 탐색
- 분석 대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분석 내용
 - 전문위원회 역할과 기능
 -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 외국 사례 분석: 국민 참여 기반 국가정책 및 교육과정 수립

- 목적: 모니터링단 운영 방안 탐색
- 내용: 국민참여에 기반한 국가정책 또는 교육과정 내용 및 기준 설정 사례
- 사례 조사 내용
 - 교육정책(교육과정)의 변경과 관련한 체계
 - 사무 처리 절차(의견 조사 방법, 주체, 결과 정리 등)
- 대상 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 전문가 집단 토의(Focus Group Discussion: FGD) 운영

- 목적: 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 마련 시 주요 고려 사항 및 실행 방향에 관한 의견 수렴
- 대상 및 방법
 - FGD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FGD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과정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으

로 진행되었으며, 전공 영역별 구성은 교육과정 전문가 5명, 교육행정 전문가 2명, 학교 현장 전문가 2명, 교육법 전문가 1명이 참여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전후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식 비교

- ① 교육과정 개정 방식 비교를 위한
체계적 접근 11
- ②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나타난
교육과정 개정 방식 12
- ③ 종래 교육과정 개정 방식 15
- ④ 특징 비교 18

II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전후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식 비교³⁾

1 | 교육과정 개정 방식 비교를 위한 체계적 접근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용어 쓰임새가 있다. 예컨대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비롯하여 절차 및 조직, 참여 인사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에서 어떤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체계적 접근을 원용한다. 즉 체계적 접근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고하게 되는 것이다.

박선화 외(2007: 15)는 교육과정 개정 체제를 ‘교육과정 개정 기관·기구’와 ‘교육과정 개정 절차’, ‘교육과정 개정 형태’의 측면 및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 기관·기구 측면은 교육과정 개정에 관여하는 인적 구성을 말하는 것이고, 교육과정 개정의 절차 측면은 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하여 고시(공표)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일련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며, 교육과정 개정 형태 측면은 개정 교육과정이 산출되는 양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컨대 수시·부분 및 주기·전면이라고 하는 개정 방식 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표 II-1>과 같이 교육과정 개정의 세 가지 측면 및 차원,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II-1> 교육과정 개정체제의 구성 차원과 세부 요소

구분	세부 요소
교육과정 개정 기관·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인적 구성 • 교육과정 정책 결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각종 위원회 • 자문·심의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심의회 • 연구·개발 기관·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각종 위원회
교육과정 개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개정을 착수하여 고시(공표)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일련의 순서 •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각 기관·기구의 해당 역할·기능 • 교육과정 개정 발의,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 수립, 기초 연구,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심의, 확정 및 고시, 교육과정 모니터링

3) 이 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영근 박사님이 작성하였다.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통찰력 있는 원고를 작성해주신 정영근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구분	세부 요소
교육과정 개정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이 산출된 양상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말하는 것임. • 총론·각론 개정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차 개정 vs 동시 개정 • 개정 간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 개정 vs 수시 개정 • 개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 개정 vs 부분 개정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라고 했을 때, ‘교육과정 개정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보다 폭넓게 말하자면 교육과정 개정 기관·기구와 교육과정 개정 절차, 교육과정 개정 형태가 어우러져 나타나는 교육과정 개정 양상을 말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교육과정 개정 형태를 비롯하여 교육과정 개정 기관·기구와 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포괄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하 이 세 가지 측면을 구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전후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특징 비교를 해 보고자 한다.

2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나타난 교육과정 개정 방식

〈표 II-2〉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따른 향후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의 관련 주요 규정을 발췌하여 정리해 본 것이다.

〈표 II-2〉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 규정 주요 사항

조항		개정 기관·기구	개정 절차	개정 형태
제9조 (국가교육과정 기준과내용 등)	• 제1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		
	• 제1항 제5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것	○	○	
제10조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등)	• 제1항: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 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	○	○

	조항	개정 기관·기구	개정 절차	개정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항: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 제2항 제1호: 교육부장관이 새로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제2항 제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시·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제2항 제3호: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인 경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항: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내용 및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 제5항: 국가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
제12조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하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	○

출처. 교육부(2023b).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내용 등)와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등), 제12조(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에서는 각각 교육과정 개정 기관·기구, 교육과정 개정 절차, 교육과정 개정 형태를 포함하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 파악된다.

총래의 경우 교육과정 개정 기관·기구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23조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정도가 등장하고 기구로는 교육과정심의회규정(대통령령 제31894호, 2021. 7. 14.)에 의한 교육과정심의회 역할이 제시되는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표 II-2>에 볼 수 있듯이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협의체 이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하여 국민, 교육감 협의체,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국민참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 및 기구들은 향후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제시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대해 종래에는 특별히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중앙 집중형 교육과정 개발 모형인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모형(curriculum research, development and diffusion models, 이하: RDD 모형)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 절차를 구안하여 활용해 왔다. 그렇지만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는 교육과정 개정 발의 주체(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 협의체, 국민)를 명확하게 규정해 둔다. 또한 함께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에서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상기의 교육 기관 및 기구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해 두고 있다. 각 교육 기관 및 기구의 이러한 역할·기능 발휘에서 그 나름의 독특한 교육과정 개정 절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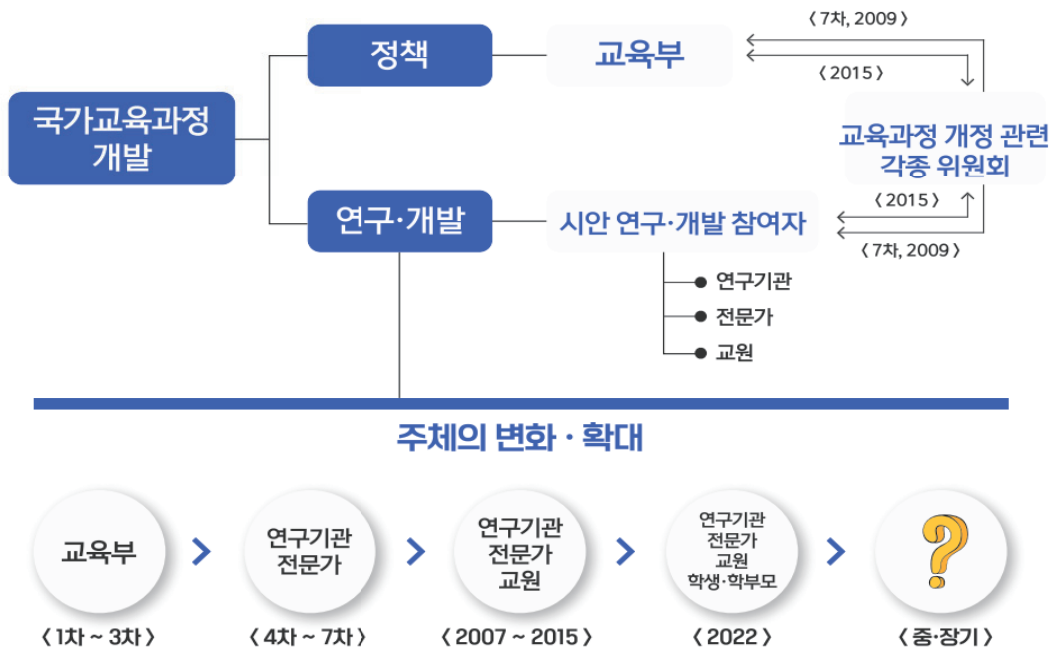
교육과정 개정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2005년 2월 교육부가 수시 개정 체제를 발표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수시 개정 체제를 도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이나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거의 주기·전면적 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2015년 12월, 2017년 1월, 2017년 9월, 2018년 4월, 2018년 7월에 각각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⁴⁾, 이것을 수시·부분 개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수시·부분 개정은 2005년 2월 교육부의 수시 개정 체제 발표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는 수시 개정 체제를 구축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지만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 협의체, 국민 등을 교육과정 개정 발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함께, 특히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인 경우’는 수시 개정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http://ncic.re.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jsessionid=98505E7511D1F38264DABA10C9E7EA39>
(2023.04.11. 인출)

3 종래 교육과정 개정 방식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중형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취해 오고 있지만, 교육과정 개정기마다 교육과정 개정 기관·기구와 교육과정 개정 절차, 교육과정 개정 형태가 다르게 원용되었음이 파악된다. 즉 법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 개정의 발의에서 고시에 이르기까지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기마다 세부 절차는 미묘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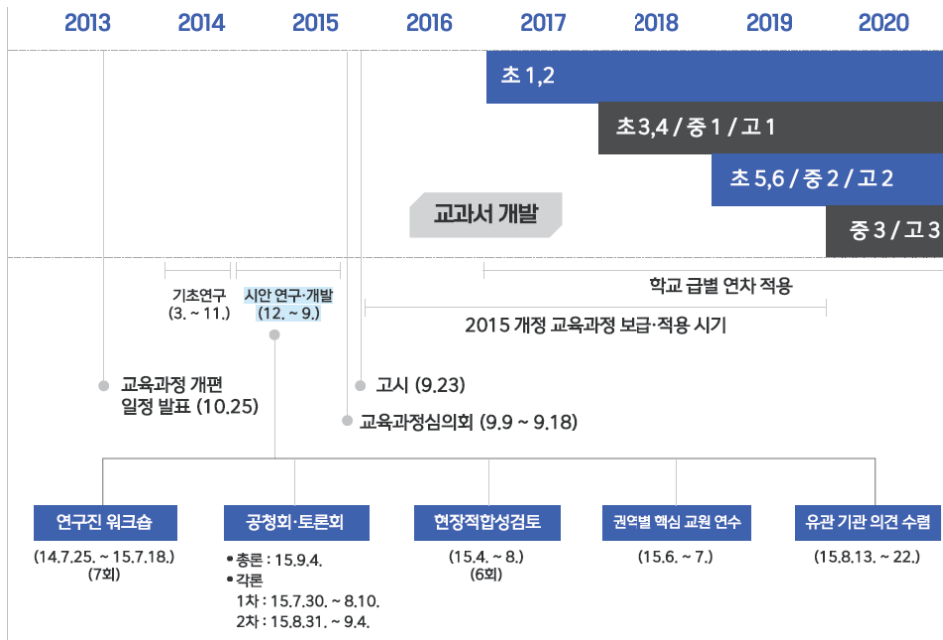
[그림 II-1]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식

출처: 정영근 외(2020: 277)에서 일부 재구성

교육과정 개정 구도는 「교육부-위원회-연구개발진」을 기본 축으로 상호 역할 분담 관계가 형성되어 개정기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른 특징을 보여 왔다. 예컨대 제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각기 위원회가 설치되어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틀을 갖춘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개정 시안이 연구·개발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는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제7차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같은 영향력을 갖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위원회도 교육부 주도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육부 주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정은 대체로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 의해 개정 방식의 기본 틀이 갖추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정영근 외, 2020: 277-278).

[그림 II-1]은 주로 교육과정 개정을 주도하는 기관·기구 및 참여 인사를 중심으로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파악해 본 것이라면, 교육과정 개정의 절차 측면에서의 개정 방식은 [그림 II-2]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II-2]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절차를 제시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절차가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 수립, 기초 연구 및 체제 구조개선 연구의 위탁, 교육과정 개정 기초 연구,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개발, 교육과정 심의회 구성·운영, 총론 개정 시안 현장 검토, 공청회, 교육과정 총론 확정, 교육과정 교과 개정안 개발 계획 수립, 교과별 교과개정 시안 연구 개발, 교육과정 교과 현장 검토, 공청회, 교육과정 개정안(총론, 교과) 작성, 교육과정 개정안 확정·고시, 교육과정 개정 후속 지원 업무, 새 교육과정의 시행의 단계로 진행된 것(교육부, 1998, 박선화 외, 2007: 18에서 재인용)에서 볼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절차도 기본적 틀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과정

출처: 정영근 외(2021: 652)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연구·개발(R&D) 체제인 교육과정 RDD 모형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다만, 전형적인 교육과정의 RDD는 중앙의 프로젝트에 의해 전문가 중심으로 교육과정 패키지를 만드는 작업이었던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RDD는 ‘시안’을 중심으로 국가와 수탁 기관·관련 집단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를 띤다. 즉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기관에게 교육과정 연구를 발주하여 위탁 개발하도록 한다. 연구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안’의 형태로 교육부에 넘기게 되고, 교육부는 심의 등을 통한 자체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고시하면, 교과서 등의 형태로 대량 생산하여 학교로 보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그 형태 측면에서 전형적인 RDD 모형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안 연구·개발진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과정까지 교육부의 영향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또한 전형적인 RDD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RDD 체제의 경우 교사의 참여는 거의 없이 전문가 위주로 연구·개발진이 구성되어 왔다. 다만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교원 참여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나 교육과정 연구·개발진에 본격적인 교사 참여가 이루어진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전체 연구·개발진 중 1차 연구는 30%, 2차 연구는 40%를 교사로 구성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외, 2015: 2).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연구·개발진에 교사를 50% 이상 되도록 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 참여를 확대하였다(교육부, 2021b: 8). 이렇게 하여 시안 연구·개발에 연구기관과 전문가에 더해 교원까지 참여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서는 교사에 이어 국민참여소통을 강조하면서 학생·학부모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특징을 보였는데, 다만 이때의 학생·학부모의 참여는 시안 연구·개발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 대부분 의견 수렴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특징 비교

가. 국가교육위원회법 나타난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특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관련 업무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식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교육과정 개정 기관·기구와 교육과정 개정 절차, 교육과정 개정 형태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먼저 지금까지 국가교육과정 개정 및 관장을 규정했던 초중등교육법의 제23조가 <표 II-3>과 같이 바뀌었다.

<표 II-3> 국가교육위원회 발족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변화

(구) 초중등교육법(2021.7.20. 이전)	(신) 초중등교육법(2021.7.20. 이후)
제23조 (교육과정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표 II-3>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 종래 교육부 장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바뀌었고, 교육부 장관의 역할은 그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역할이 바뀌었다. 종래에는 교육부가 교육과정 정책 결정 기관이면서 동시에 정책 집행 기관이었지만,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개정에 따라, 교육과정 정책 결정 기관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바뀌었고 교육부는 정책 집행 기관의 역할·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변화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앞의 <표 II-2>에 보는 바와 같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보다 구체적인 역할·기능이 규정되고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법적 기구들이 명시되었다. 예컨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는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비롯하여 전문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고 교육연구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관 및 기구들은 어떤

형태로든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한 역할·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의사결정 담론(하연섭, 2023: 27)에서 보자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들 기관·기구를 통해 조정적 기능과 소통적 기능을 발휘하면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의 기관·기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들 법적 기관·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원용하게 될 것이고 교육과정 개정 형태는 주기·전면보다는 수시·부분 개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전후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 비교 및 특징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된 시점을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공포·시행된 2022년 7월 21일로 볼 수 있겠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은 2022년 9월 27일이고 조직이 실제 가동된 것은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1월 정도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말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전의 국가교육과정기는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⁵⁾.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전후의 국가교육과정 구분은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와 이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이렇게 보자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전의 국가교육과정은 개정·고시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은 교육과정이고 설립 이후의 국가교육과정은 이 법과 시행이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보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나타난 국가교육과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보자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후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이전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두었다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사회적 의사결정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는 특징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 및 시행령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변화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사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일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정 기관·기구 측면에서 개정 방식은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주관부처가 교육부이고 전문가 위주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특징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개혁위원회'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그것이고, 다른 교육과정기의 위원회는 주로 교육부가 구성한 전문가 위주의 '교육과정개정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 위주의 위원회 및 시안 연구·개발진 구성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5)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할 시 새 교육과정 명칭을 무엇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종래의 수시·부분 개정과 같이 부분적인 교육과정 개정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전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 고시 제2022-23호」를 의미한다.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이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안 연구개발진에 교원 40% 이상이 포함되도록 변화를 주었다. 나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안 연구개발진에 교원 5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국가교육회의의 사회적 ‘합의’ 및 ‘협의’라는 방침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학생 및 학부모, 국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조직·기구를 구성하였다. 예컨대 교육부는 2021년 4월 20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에서 학생 및 학부모, 교원 등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개정추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고,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국민참여단 및 청년청소년자문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교육부, 2021a: 2). 실제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안 개발 과정에서 이들 조직 및 기구가 가동되었다. 다만 이들 조직 및 기구는 교육부 및 국가교육회의에서 임의 구성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교원 참여 확대도 국가교육회의의 영향력과 교육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교육위원회 발족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과정 개정의 각종 조직 및 기구는 국가교육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래와 같은 임의 조직·기구가 아닌 법적 기반의 조직·기구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이후의 교육과정 개정 기관·기구는 법적 성격을 지니면서 교육과정 개정의 사회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정 절차 측면에서는 앞의 [그림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두어 사회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과정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학부모 공감&소통 콘서트’ 및 ‘현장 교원 중심의 교육과정 포럼’, ‘국민참여소통 채널’, ‘교육과정심의회 학생참여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가동한 것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표방한 교육과정의 사회적 합의 및 협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종래의 교육과정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넘어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사회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이후에는 이러한 사회적 의사결정 절차는 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및 전문위원 등과 같은 법적 기반을 지닌 조직 및 기구를 통해 보다 폭넓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본다.

교육과정 개정 형태 측면에서는 200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과정 수시 개선 체제 구축 방안 탐색’ 세미나를 비롯하여 수시·부분 개정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 교육부는 2005년 2월에 수시개정 체제를 공식 발표하였다(교육부, 2005). 이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에 이어 개정된 교육과정은 고시한 당해 연도를 표기하여 명칭을 부여하기 시작했는데,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가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2007 개정 교육과정이나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거의

주기·전면 개정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고, 수시 개정은 이들 사이에 개정된 부분 개정이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교육부장관이 새로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2항 제2호(교육감 협의체가 시·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2항 제3호(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인 경우)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형태가 명확히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요컨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이후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전문가 위주로 정책 추진의 효율을 추구하는 절차에서 사회적 의사결정을 중요시하는 절차로 전환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한 전문위원회 운영 방안 탐색

-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
- ② 방송통신위원회 27
- ③ 국가인권위원회 29
-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0
- ⑤ 전문위원회 역할 설정에 주는 시사점 .. 35

Ⅲ |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한 전문위원회 운영 방안 탐색

본 장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전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대통령직속 자문기구) 등 국가교육위원회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에서의 전문위원회 조직 및 구성, 법적 권한, 사무 처리 과정 등 전반적 운영 현황을 관계 법령을 통해 파악하였다. 더불어, 법령상의 운영 현황과 함께 실제 운영상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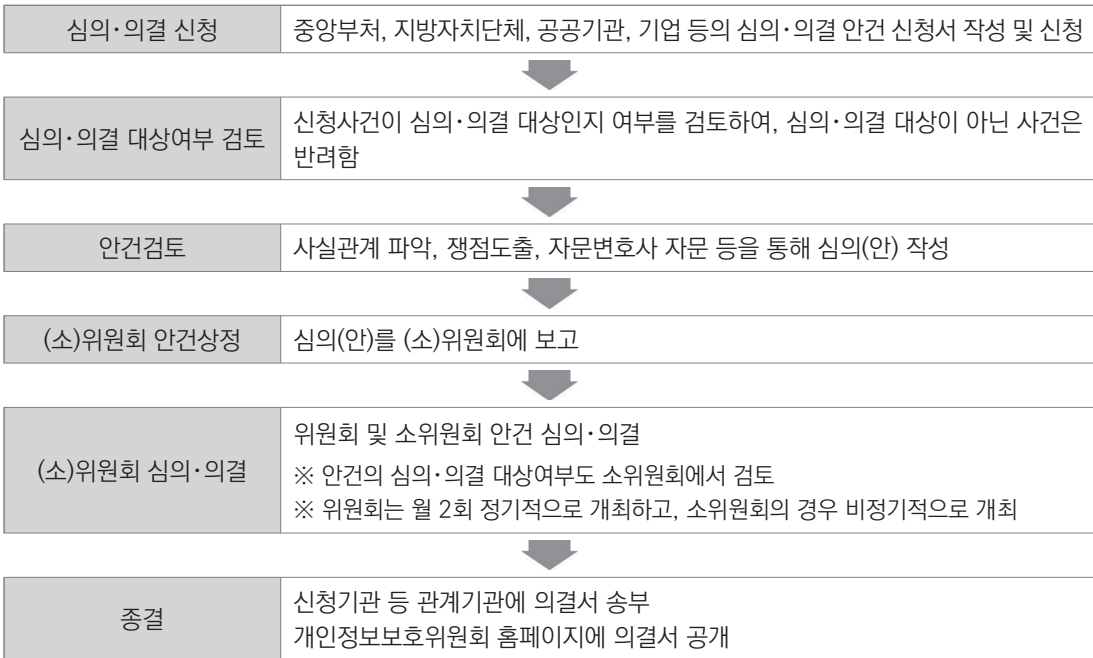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⁶⁾.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장 제5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것을 전문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장 제7조의12에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소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문위원회는 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전문적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행령 제5조 제2항에는 전문위원회의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혹은 위촉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법령상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소집,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소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pipc.go.kr/np/default/page.do?mCode=F010010010>, (2023.3.28. 인출)

개보위의 심의·의결 과정에 대해 실무적인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보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III-1]과 같다. 중앙부처 등 외부 주체의 심의, 의결 안전에 대한 요청이 접수되면, 먼저 (소)위원회 차원에서 심의, 의결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심의, 의결 대상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 쟁점도출, 자문변호사 자문 등의 과정을 통해 심의(안)을 작성하는 안전검토 절차를 거친다. 이후 (소)위원회에서 이를 안전으로 상정하고, 심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요청 주체에 의결서를 송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그림 III-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출처: 개인정보위 홈페이지(<https://www.pipc.go.kr/np/default/page.do?mCode=E010020000>) (23. 3. 28. 인출)

법령에는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회는 (1)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여부 검토, (2) 안전검토의 두 절차에 걸쳐 전문적 사전검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8월까지의 개보위 전문위원회의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2) 안전검토 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개보위 제2법령평가 전문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의결(안)을 개보위에 제출하였다. 이후 개보위는 해당 건에 대해 심의하고, 제출된 전문위원회의 검토내용 및 의결(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b: 23-24).

한편 2020년 8월에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개보위의 조직 성격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핵심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편재되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능이 개보위로 통합된 것이며, 이를 계기로 개보위는 종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a). 해당 시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8. 4.) 사항을 살펴보면, 전문위원회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종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전문위원 임명, 위촉의 경우 개정 전에는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개정 이후는 동의 절차 없이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이 되는 전문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이 대부분 삭제되었는데, 가령 전문위원회 회의 및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 3항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운영 세칙을 두도록 한 법 제10조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삭제되어 전문위원회 사무 처리 절차 등은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의사 결정에 있다기보다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검토 의견 제시에 있다는 점에서 (소)위원회가 융통성 있게 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다⁷⁾. 방통위 전문위원회의 설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 전문위원회는 (1)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 혹은 (2)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방통위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7)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목적”.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kcc.go.kr/user.do?page=A04010100&dc=K04010100>. (2023.3.28. 인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장 제5조에서는 방통위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장 제23조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한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문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개에 관한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방통위 전문위원회의 실무적인 운영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비교적 최신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방통위는 제46차 위원회 회의에서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에 관련하여 방통위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사전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설치를 의결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14. 10. 17.).

한편 방통위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위원회 소관 정부위원회를 두고 있어, 해당 위원회가 특정 분야의 전문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방통위에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공무원, 민간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 분과위원회(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심의·의결권한이 있지만, 그 외 9개 분과위원회는 단순자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23). 이들 분과위원회는 자문역할 뿐만 아니라 조사, 연구, 기본계획 자문, 조정, 제도 개선안 도출, 심의, 개정안 제안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10개 소관 위원회 중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역할을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제2기(2021. 6. 12. ~ 2023. 6. 11.)가 운영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5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의 회의는 개인정보위 전문위원회 사례와 유사하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또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위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항에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연구 및 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앞선 개인정보위, 방통위와 달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업무, 운영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이 규칙 제2조 제1항에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그리고 해당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 Ⅲ-1>과 같다.

<표 Ⅲ-1>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전문위원회
상임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지역인권전문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전문위원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전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위원 중 1명을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전문위원회의 인원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 설립목적”.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humanrights.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2&menuLevel=3&menuNo=97>, (2023.3.28.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4조 및 제6조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검토, 보고와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소위원회 및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르면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한 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사례와 달리, 전문위원회의 회의 개의 및 의결 조건에 대해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법령상에는 전문위원회의 기능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연구 및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분야별 정책, 의제 등에 대해 실무적 자문,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북한인권전문위원회는 2021년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제4차 인권 NAP 수립과 관련된 북한인권 정책 등 위원회의 북한인권 관련 업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137). 그 외 전문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정 사안, 쟁점사항, 업무계획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394). 다만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의 “기면증에 대한 장애 정도 판단기준의 차별 여부”, “개인 SNS를 통한 장애인 비하 발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인정 여부” 등의 논의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전문가적 검토와 판단이 요구되는 논의 사항으로 보이나, 전문위원회의 세부운영 관련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한 회의록 공개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실제적인 검토 및 보고 과정을 문서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국가균형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 국가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4장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균형위의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전문위원회의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위원은 균형위 위원장이 위촉하며, 간사위원(위원장) 1명은 균형위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3장 제9조에는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균형위에는 정책기획·평가, 지역혁신·마을공동체, 지역산업·일자리, 교육·복지, 문화·관광, 지역활력·공간정책 등의 6개 전문위원회(9)가 있다. 또한 각 전문위원회는 3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타 위원회의 전문위원회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검토, 보고에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해당 전문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10조 제4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동일하게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와 유사하게 전문위원회의 보고(의견 제출)와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안전 상정 이전 단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의견 제출, 의결 사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모든 안전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안전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안전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제1항 역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안전을 상정하기 전에 전문위원회의 상정·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두 조항을 종합해보면,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안전 상정에 앞서 해당 안전을 사전에 검토 하는 역할을 하며,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이 전문위원회 위원 모두의 논의를 거친 결과임을 상정과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든 안전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며, 위원장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8년 3월까지 ‘지역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현재 법에 규정된 6개 전문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어 왔다. 이후 2020년 12월 3일에는 ‘균형발전·규제혁신 전문위원회’가 신규 위촉되었다. 이로써 2023년 4월 현 시점에는 7개 전문위원회(정책기획·평가, 지역혁신·마을공동체, 지역산업·일자리, 교육·복지, 문화·관광, 지역활력·공간정책, 균형발전·규제혁신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제2항에는 전문위원회의 직무를 “전문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관련 되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규정함으로써 전문적 의견제시뿐만 아니라 연구·조사 역할까지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의견’은 ‘안전 상정 전’ 단계의 ‘사전검토 의견’ 뿐만 아니라 개별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영역 전반에 대한 자문·검토 의견으로 보여진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균형발전위 전문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 비해 규모가 크며, 전문위원회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사전검토 역할을 하지만, 위원회 안전 상정 전 전문위원회의 상정 및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위원회와 다른 운영 모습을 보인다. 이상의 논의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III-2〉).

〈표 III-2〉 유관 기관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종합

구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장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위법 제4장 제15조 방송위법 시행령 제3장 제5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장 제22조 및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장 제12조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장 제24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2장 및 제3장
분과/소위원회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소위가 전원의 일부 소관 사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전문적 검토한다고 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위 소속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임위, 소위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음(총 11개) 분야별 전문성 및 특수성 고려하여 전문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에 7개 분야의 전문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 분과위 및 소위는 없음
전문위원회의 법적 권한 및 직무	사전검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장 제5조)	○ (방통위법 제4장 제15조, 방통위법 시행령 제3장 제5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장 제22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장 제12조)
	조사·분석·연구	×	×	○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장 제24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자문	×	○ (방통위법 제4장 제15조, 방통위법 시행령 제3장 제5조)	×
	의견 제출 및 보고	×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2장 제4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구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운영 및 의결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전문위원회 위원장 소집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위원장의 소집요구, 또는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필요에 의해 개최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전문위원회 위원회 구성	-	-	사회권전문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지역인권전문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자유권제1, 2전문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회, 장애인권전문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군인권전문위원회 등 11개	정책기획·평가, 지역혁신·마을공동체, 지역산업·일자리, 교육·복지, 문화·관광, 지역활력·공간정책 등 6개 (2020년부터 균형발전·규제혁신전문 위 추가)
전문위원장 임명 방식	위원장 1명, 위원 20명 이내	위원장 1명, 위원 15명 이내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장(간사위원) 1명, 위원 30인 이내(당연직(국장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민간 전문가))
전문위원회 위원 임명 방식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위촉	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위원 중 지명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임기	-	2년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위원회 의결(안)에 대해 (소)위원회가 참조, 심의하여 최종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 규칙으로 명시 전문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소관위원회를 두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임위, 소위의 소속 조직이며,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음 검토 내용을 위원회 회의 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위원회에 비해 전문위원회 규모가 큼 위원회 안건 상정 전 전문위원회 상정, 의결을 거쳐야 함 전문위원회의 연구·조사 사항에 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위원장과 기화단장으로 구성하는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음

5 전문위원회 역할 설정에 주는 시사점

이 장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 내에서의 전문위원회 조직 및 구성, 법적 권한, 사무 처리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대체로 유관 기관들은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주로 자문과 사전검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기능의 구체성은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소관 사무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실무적 자문, 심의, 의결 활동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대 개인정보위 전문위원회는 법령상 (1) (소)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여부 검토, (2) 안전 검토의 두 절차에서 전문적인 사전검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다만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후자인 안전검토 단계에서 심의·의결 대상으로 판단된 사안에 대해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의 업무 수행 양상을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위원회 경우 실질적 기능이 실무적 자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국가인권위의 경우 특정 현안이나 의제에 대한 실무적 자문 제공부터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통한 의견 제출까지 업무 범위의 폭이 넓었다.

이러한 사례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운영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관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5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6개 소위원회별로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총 11개 전문위원회 운영).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2조 제2항에서는 분야별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 전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3항에서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안전의 전문성,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과별, 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영역별 전문위원회의 사무 처리 과정상 요구되는 사안의 범위와 내용이 상이하기에, 업무 처리의 전문성, 특수성을 반영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업무와 관련된 사안 역시 교과 영역, 학교급, 관련 주체 및 내용 등에 따라 업무 범위, 구체성 등 성격이 상이할 수 있다. 예컨대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하는 것과 같은 종합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의 참석이 필요하지만, 특정 학교급 또는 교과에 한정된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과 사전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위원회가 수행하는 개별 사안의 전문성, 특수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위원회가 자문과 사전검토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전문위원회가 사안에 관한 전문적 판단에 앞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 수렴 또는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내용과 범위는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변경 요청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검토 요소로 내용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현장에 주는 영향, 현행 교육과정 내용과의 중복성 등 사전검토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일 것으로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자문과 사전검토 과정에서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셋째, 전문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문위원회 위원 간 협의와 논의를 중요시 할 지, 운영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중시할지에 따라 회의의 요청, 개의, 의결 방식 등 전문위원회의 사무 처리 절차 및 운영 대한 내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소관 사무에 대한 실무적 자문과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로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개의 조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 조건을 명문화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도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회의 운영(소집, 개의, 의결 등)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두 기관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결과 보고를 제외한 구체적인 회의 상정, 의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2020년 법 개정 시 전문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법령에 포함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위원회 위원 간 다양한 의견 제시와 논의의 결과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전문위원회의 회의 안건 상정, 개의, 의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자문 내용과 사전검토 의견은 전문위원회의 합의에 따른 공식적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엄격히 규정할 경우 절차적 복잡성과 시간, 비용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가 학교급별, 교과별 다양한 전공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정 사안의 경우 전공분야가 아닌 사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개의, 상정, 의결 요건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른 탄력적인 전문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특정 사안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전문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자문과 사전검토를 수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특수성에 기반하여 보다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개의, 상정,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을 시 사전검토 내용이 가지는 의미가 약화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위원 개인의 의견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상의 유관 기관 사례와 향후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사무처리 절차 및 운영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단 운영 방안 탐색

❶ 프랑스	41
❷ 영국	46
❸ 독일	54
❹ 일본	58
❺ 모니터링단 역할 설정에 주는 시사점 ..	64

IV |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단 운영 방안 탐색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의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 관련 단체,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방법을 국외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은 각기 다른 교육행정체제를 갖고 있으나, 교육부가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교육과정 수립 및 개정을 위한 계획안을 구안한다는 점, 이 과정에서 독립된 자문기구 또는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여 운영되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교사, 학생,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원칙과 절차, 방법 등을 운영한다는 점이 유사한 국가이다. 각국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에서의 의견 수렴 방안을 구안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프랑스¹⁰⁾

가. 교육행정체제

프랑스에는 중앙정부의 국가교육, 아동 및 청소년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이하: 교육부)에서 학교 교육 안팎의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주요 권한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Gouvernement, n.d.).

- 교육계열별 국가교육과정 결정 및 교육내용 조직
- 국가자격증 규정과 발급 및 대학 교육 학위증 수여
- 교직원 선발 및 관리
- 공공서비스의 접근 평등성을 고려한 교육 재정 배분
- 교육 체계의 전반적인 일관성 유지를 위한 교육정책의 관리 및 평가

10) 프랑스 사례는 몽펠리에 대학교 박사과정 김현경 선생님이 작성하였음

교육부의 조직은 크게 업무부서, 장학총괄국, 산하기관의 세 가지로 나뉜다.

- 업무부서는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하위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교육 총괄국(DGESCO), 인적자원국(DRH), 평가·전망·성과국(DEPP-통계국), 재정국, 교육디지털국 등이 있다.
- 장학총괄국(Inspection générale de l'Éducation nationale)은 학교교육을 총괄하고 평가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낸다.
- 산하기관에는 교육과정고등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s programmes - 이하: CSP)와 국가교육과학위원회(Conseil scientifique de l'Éducation nationale)가 있다. 국가교육과학위원회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 교수·학습 방법 향상을 목표로 2018년에 신설된 기구로서, 인지과학, 수학, 정보과학, 경제, 언어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대학교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 양성과정과 교육부 정책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안하며, 교수·학습 도구를 평가하고 검증된 도구를 교육 현장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MENJ, 2023a).
- 교육고등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이하 CSE)는 '교육의회'로 볼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 혹은 대리자가 위원장을 맡고 교원, 교육공무원, 이해관계자(학부모 등), 지방자치단체 대표, 유관 단체의 대표자 98명으로 구성된다. 교육 관련 법령,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모든 문건에 의견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 자문기관이며, 교육과정고등위원회의 계획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MENJ, 2023c).

이 중에서 국가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과정고등위원회(CSP)이다. 해당 기관은 2013년에 신설된 기관으로, 여러 교육개혁을 내용으로 한 공화국 학교 재건 법(*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fondation de l'école de la République* du 8 juillet 2013)에서 설립과 운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관의 역할과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교육법 L231-14 ~ L231-17조(Articles L231-14 à L231-17 du Code de l'éducation)와 D231-34 ~ D231-42조(Articles D231-34 à D231-42 du Code de l'éducation)에서 정하고 있다. 교육과정 고등위원회는 교육과정 수립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과정상의 교육내용, 지식·역량·소양 공통 기본과정(Socle commun de connaissances, de compétences et de culture - 공통교육과정에 해당), 평가, 교원양성 사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MENJ, 2023b).

교육과정고등위원회는 교육부 소속의 독립된 기구로서, 국가와 사회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각각 3명, 사회경제·환경위원회¹¹⁾ 대표 1명,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 교육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교육과정고등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요청 또는 자체 활동으로서 다양한 교육 문제를 검토한 후 의견서와 제안 사항을 제시한다(MENJ, 2023b).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교수·학습 방법에서의 디지털 기술 사용, 공통교육과정과 교과교육과정의 내용, 학교급 간의 연결성, 공통교육과정의 성취평가 방법, 중등학교 국가졸업자격시험의 성격과 내용, 건강장애 학생들의 시험 응시를 위한 수정 및 개편,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의 성격과 내용, 건강장애 학생들의 시험 응시를 위한 수정 및 개편, 교사 양성 및 연수 목표 및 계획 등을 검토한다. 2022년의 경우, 교육과정고등위원회는 교원 양성과정 및 임용,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학 교과 교육과정 개편, 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및 방법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MENJ, 2023b).

나. 교육과정 수립 및 개정 절차

프랑스는 교육과정고등위원회(CSP) 설치와 더불어 ‘학교 교육 내에서의 교육과정 수립, 시행 및 관리와 학생 평가 방법에 관한 현장(이하: 교육과정 현장)’도 함께 시행되었다. 교육과정 현장은 교육과정의 수립부터 시행까지 교육과정 문서와 교사 교육과정, 학생 교육과정을 통틀어 교육과정의 질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였다. 해당 현장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1장. 교육과정의 특징, 2장. 교육과정 수립, 3장. 법제도 안에서의 교육과정 규정, 4장.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5장. 교육과정의 수명: 실행, 평가, 개정, 6장. 교육과정, 연구, 교원양성이다. 이 중에서 교육과정 수립 및 개정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2장(교육과정 수립)과 5장(교육과정의 수명: 실행, 평가, 개정)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MENJ, 2022a).

교육과정 수립은 투명성, 접근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수립, 작성, 점검, 평가, 개정 방법 및 학생 평가 방법에 관한 정보를 명료하게 전달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의 개정은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발생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를 들어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관련한 지식이나 실재가 변화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불가결할 경우,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이러한 새로운 교육내용을 소개해야 할 경우, 교육과정 내용의 적합성이나 공평성 문제로 인해 학생들

11)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문제에 관해 행정기관(정부및입법기관)에 자문을 하고, 법안이나 청원 제출 시 검토하는 역할을 맡음. 서로 다른 직업과 단체의 대표자 17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지속해서 관찰된 경우에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정은 일반적인 절차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MENJ, 2022a).

교육과정 수립은 일반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고등위원회(CSP)에 관련 계획 수립을 요청하면서 시작된다(MENJ, 2023b).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전문가 집단에서 계획을 구안하고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고등위원회(CSP)에 교육과정 계획 수립을 요청한다.
- ② 교육과정고등위원회(CSP)는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을 계획한다.
- ③ 교육과정고등위원회(CSP)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 구성 전담팀(GEPP)을 구성하고, 수립팀에서 교육과정 계획을 구상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계획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며, 전문가와 교원노조, 교과별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1차 의견 수렴).
- ④ 교육과정 구성 전담팀(GEPP)의 팀장은 교육과정고등위원회(CSP)에 계획안을 제출하고 논의한다. 이때 위원회에서는 필요시 관련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 ⑤ 교육과정고등위원회(CSP)에서 교육과정 계획안의 논의를 마무리하며 투표한다. 위원회 정족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MEJSER, 2020) 계획안을 확정하고 온라인으로 발표한다. 이때 교육부 내에서 교육과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2차 의견 수렴), 의견 수렴의 결과를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교육과정고등위원회(CSP)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 ⑥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 계획안을 채택하기 전에 교육고등위원회(CSE)에 제출하여 의견을 묻는다.
- ⑦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 계획에 대한 최종 확정안을 채택한다.
- ⑧ 새로운 교육과정이 교육부 관보에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이상의 절차를 보면 교육과정고등위원회(CSP)에서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계획안 구상, 의견 수렴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가 관계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고등위원회(CSP)는 개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 구성 전담팀(Groupes

d'élaboration des projets de programmes; GEPP)'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팀은 평균 10~15명으로 구성되는 임시 조직이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MENJ, 2022b), 전담팀은 2명의 공동대표(대학교원 1명, 교육부 총장학사 1명)를 포함해서 교직 경력과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현장 교원, 대학교원, 전문가 및 협력 기관의 관계자로 구성된다. 원활한 내부 소통을 위해 교육과정고등위원회의 위원 1명이 해당 팀을 전담하면서 함께 활동한다. 교육과정 구성 전담팀은 계획안을 구안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평가 결과를 참고하거나 관련 조사 및 연구 결과, 자체 의견 수렴의 결과를 참고한다.¹²⁾

다. 의견 수렴 절차와 사례

교육과정 수립과정에서 2단계에 걸쳐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 먼저 교육과정 구성 전담팀이 계획안 구안을 위해 교육부 장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1차 의견 수렴의 절차가 있다. 교육과정 수립 단계에서 해당 교육과정이 학생과 교원의 역량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실행에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받을 수 있으며, 교원노조 및 교육단체(시민단체 포함)에서 제시한 의견도 수렴한다. 일례로 교육과정고등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생태 다양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내용을 강화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2019년 9월과 10월에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관련 분야 연구자, 교육부 총장학사, 공공기관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23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MEJESR, 2020).

2차 의견 수렴은 교육고등위원회(CSE)에 교육과정 계획안을 최종 제출하기 전에 교육부 내 학교교육총괄국(DGESCO)에서 실시하는 국가 차원의 의견 수렴(Consultation nationale sur les projets de programme)으로 이루어진다. 1차 의견 수렴보다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일반 교원, 학부모 단체 등이 의견 수렴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2차 의견 수렴의 결과는 교육과정 계획안을 수정하여 재검토하는 데 반영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2015년에 실시한 의견 수렴을 들 수 있다. 2013년 공화국 학교 재건법¹³⁾에 의무교육(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단계에 적용되는 공통교육과정을 재정의 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교육과정고등위원회(CSP)가 2015년 4월에 새로운 의무 교육과정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12) [https://www.studyrama.com/formations/diplomes/bac/l-objectif-est-de-proposer-les-meilleurs-programmes-105311EntretienaveclairésidenteduCSP\(2023.03.06. 인출\)](https://www.studyrama.com/formations/diplomes/bac/l-objectif-est-de-proposer-les-meilleurs-programmes-105311EntretienaveclairésidenteduCSP(2023.03.06. 인출))

13) 해당 법은 다양한 교육개혁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교사양성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개편, 교육과정고등위원회(CSP), 학교교육체계 평가 국가위원회(CNESCO) 설치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해당 계획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견 수렴을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5주간 실시하였고, 초등 및 중등교원, 관리자, 장학사, 학부모 연합 단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MENESR, 2015). 의견 수렴의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조사 방법이 적용되었는데, 초등 및 중등교원은 온라인 방식의 개별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교육과정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지, 세부 영역 간의 연결 정도는 어떠한지, 학교급 간의 지속성이 보장되어 있는지, 교육과정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준인지,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학생 성취 수준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의 성취 정도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지역 장학사는 교육과정 계획안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견과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학부모 연합 단체는 교육부의 학교교육총괄국(DGESCO)에서 교육과정의 가독성과 세부 영역 간의 연결 정도, 학생 평가 내용 및 성취 수준 지표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일반 국민의 경우 개인(학부모, 대학생, 교사 연수자, 연구자 등), 단체(학교 내 회의 기관, 교과별 단체 등), 기관(성평등고등위원회, 유니세프 프랑스 등)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MENESR, 2015).

2 영국¹⁴⁾

가. 교육행정체제

영국은 잉글랜드(England), 웨일스(Wales),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스코틀랜드(Scotland)로 나누어져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집행 또한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영국 교육행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의 교육부(이하: 영국)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영국에서는 정부 산하의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가 유아 및 아동 돌봄 정책, 계속 교육 등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안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교육정책을 총괄한다. 교육부 장관(the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은 부서의 회계 담당관(Accounting Officer) 겸 사무 차관(the Permanent Secretary)¹⁵⁾의 보좌를 통해 정책 결정 및 예산 관리 업무를 감독한다. 교육부는 집행 기구를 포함하여 2023년 기준 현재 총 18개의 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14) 영국 사례는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박사과정 김연주 선생님이 작성하였음

15)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수년간의 임기가 보장되는 영국의 공무원 직위. 행정의 전문성, 일관성, 중립성을 위해 별도로 사무 차관 제도를 두고 있음. 교육부 장관의 경우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총선 결과 및 영국 총리 해임에 따라 수시로 교체되는 것과는 상이함.

교육부 산하의 관련 기관들은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집행 기구(Executive agency), 비 부서 공공기관(Executive non-departmental public body), 비 부서 자문기관(Advisory non-departmental public body), 기타 그룹 기관(Other Group bodies), 비 그룹 기관(Non-Group bodies)으로 분류된다. 교육부의 집행 기구는 교육부의 실무를 담당하며 나머지 기관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기관은 법적으로 교육부의 집행 기구와 분리되어 있지만, 교육부가 설정한 전략 아래에서 통합적으로 기능한다. 또한 각 기관의 의장과 비상임 이사진은 보통 교육부가 임명하며, 부서의 최고경영책임자를 선임할 때도 교육부의 자문을 구한다. 다만 비 그룹 기관은 교육부의 감독하에 있는 것이 아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지만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여기에 속하는 주요 기관으로 자격·시험감독청(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Ofqual), 교육기준청(Office of Standards in Education; Ofstead)이 있다(DfE, 2022).

나. 교육과정 수립 및 개정 절차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은 1988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총 4번의 전면 개정을 거쳤으며, 2014년에 개정된 국가교육과정이 현재까지 각 학교에 적용되고 있다(Roberts, 2021). 개별 학교는 교육부에서 ‘잉글랜드 국가교육과정: 핵심 단계 1에서 4단계 프레임워크(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framework for key stages 1 to 4)’ 지침을 따르되, 독자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고(DfE, 2014), 교육부가 별도로 명시한 의무 학습 내용 외의 과목은 단위 학교가 취사선택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일정한 주기를 두고 교육과정을 개정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면 정부 주도로 교육과정 개정 계획이 발표되고 시행된다. 국가 교육과정 수립 및 개정을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상설 조직이나 기관은 없으며 필요에 따라 교육부가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02년에 제정된 ‘교육법(Education Act 2002)’ 제87절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개정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자문할 수 있고, 같은 법 96절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관련 훈령 및 규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전면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했던 2013년의 경우,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발 및 검토를 담당할 전문가를 선정하여 ‘국가 교육과정 검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DfE, 2012). 전문가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어 개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한 시적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영국 교육부는 교육과정 수립 및 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필수적

인 절차로 여기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양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 수렴 활동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의 세부적인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성교육과 인간관계를 다루는 교육과정이 초·중 및 중등학교에 의무 과목으로 개정되는 과정을 사례로 하여 의견 수렴의 주체와 역할, 시기, 범위, 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현재 영국에서는 초등교육에서 관계 교육과 건강교육(Relationships Education and Health Education)이, 중등교육에서 관계 및 성교육과 건강교육(Relationships, Sex and Health Education)이 법적 필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¹⁶⁾. 해당 교육과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가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이슈를 파악하고 의제를 설정한 후 의견 수렴을 담당할 전문가 자문위원 임명, 관련 의견 취합 후 정책 문서 초안 작성, 결과 발표 및 정책 문서 초안 배포, 정책 문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수정, 최종 확정 및 실행의 단계를 거쳐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1〉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 단계와 주요 내용

시기	구분	주요 내용
2017년 3월	이슈 파악 및 의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과 복지법(the Children and Social Work Act)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관계와 성교육, 건강을 다루는 과목의 법정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교육부 장관이 해당 과목의 법정 의무화 진행 의사를 밝힘
2017년 11월	전문가 자문위원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담당할 전문가 위원을 임명함
2017년 11월~ 2018년 3월	증거 수집 (Call for Evid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90개 관련 단체에 의견 개진을 요청함 교원, 교원단체, 교과 협의회, 학부모 단체,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함 학부모, 학생, 교원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함
2018년 3월~7월	의견 취합 및 정책 문서 초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거 수집 단계에서 받은 답변서를 취합하여 분석함 규정(Regulations), 법정 지침(Statutory Guidance), 규제 영향 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초안 작성
2018년 7월	의견 수렴 결과 발표 및 정책 문서 초안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거 수집 단계에서 받은 의견의 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을 배포함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정책 문서 초안을 배포함

16) 영국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educationhub.blog.gov.uk/2023/03/10/what-do-children-and-young-people-learn-in-relationship-sex-and-health-education/> (2023.03.15. 인출)

시기	구분	주요 내용
2018년 7월~11월	정책 문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된 정책 문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함. 주관식 질문(24개), 객관식 질문(21개)으로 구성됨 학부모, 교원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함 의견 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문서를 수정함
2019년 6월	정책 승인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가 최종 법정 지침을 발행함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2021년 여름까지 개별 학교에서의 실행이 연기됨

출처: DfE(2017a;2017b;2018;2019)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교육부가 교육과정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나,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 전문가위원회가 실제 개정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초안의 검토, 수정 및 재확정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을 알 수 있다. 사례로 제시한 ‘개인, 사회, 건강과 경제’ 과목의 무화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33년의 교사 경력과 13년의 교장 경력, 학교 또는 대학 지도자 협회(the 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 Leader)의 장을 역임한 교육재단의 대표자를 전문가 위원으로 임명하였다¹⁷⁾. 전문가 위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 집단에 대한 총체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전문가 패널이나 자문단을 구축하는 대신 다수의 전문가가 의견 수렴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의견 수렴은 증거 수집 단계에서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작성한 정책 문서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등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는데, 교원, 교원단체, 교과목 연합회, 학부모, 종교단체, 의회 의원들을 망라하는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총 90개의 관련 단체 및 조직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기준청(Ofsted), 잉글랜드 아동위원회(Office of the 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와 같은 정부기관, 학교 및 대학 지도자 연맹(The 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 Leaders, ASCL), 전국 교장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이하: NAHT) 등과 같은 교원단체, ‘맘스넷(Mumsnet)’, ‘패런트카인드(Parentkind)’와 같은 영국의 대표적인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및 단체와 같이 일반적으로 교육정책에 관여하는 이해당사자를 기본적으로 포함한다. 또한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상 영국 성공회(The Church of England), 가톨릭 교육 서비스(The Catholic Education Service)와 같은 종교단체, 영국의 에이즈 및 성 건강 관련 자선단체인 테런스 히긴스(Terrence Higgins Trust) 단체 등과 같은 관련 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다(DfE, 2018). 이들 단체는 정부의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

17) 영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news/relationships-and-sex-education-for-the-21st-century>(2023.03.15. 인출)

데 몇몇 기관의 경우 따로 기관 내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국 교장협의회(NAHT)와 같은 주요 단체의 경우 홈페이지에 교육부 요구에 대한 교장협의회 답변서를 공개하고(NAHT, 2018a), 전국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도 함께 첨부하였다(NAHT, 2018b).

이처럼 관련 단체 및 조직에 자문을 요청하는 동시에 교육부는 교원, 학부모, 교원단체, 관련 기관 종사자, 학생 등 폭넓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국민의견을 수렴했다(DfE, 2017a). 주목할 만한 점은 해당 교육과정의 대상자인 19세 이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따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배포했다는 것이다(DfE, 2017b). 해당 문서는 성인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보다 더 쉽고 간명하며 친근하게 작성되어 있다. 왜 해당 교육과정이 중요하며 모든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 학생들의 눈높이로 설명하고 총 5개의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지금까지 교과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거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데도 학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물었으며 하나의 질문에 250개 단어로만 답변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 교육부는 약 23,000건의 의견을 받았으며, 이 중에서 약 18,000건은 교육부가 상설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의견 수렴 허브(Consultation hub)'를 통해, 약 4,500건의 응답은 서신과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응답에 대한 분석은 외부 계약 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영국의 대표적인 시장 조사 업체인 Ipsos MORI와 공공 정책 연구 및 자문기관인 알다바 유한회사(Aldaba Limited)가 응답의 결과를 분석했다. 서신과 이메일로 제출된 의견들은 교육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되었다. 분석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정부 보고서로 출판되었으며 의견 수렴 허브에 게시하였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가르칠 교과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일치 또는 상충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해당 내용을 반영해서 어떻게 정부가 규정, 법정 지침 등을 마련했는지 서술되어 있다(DfE, 2018).

교육부는 작성한 정책 문서를 확정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로 거쳤다. 의견 수렴 질문지는 24개의 주관식 질문과 21개의 객관식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부는 전체 객관식 응답을 모두 검토했으며 모든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시행했다. 또한 각 주제에 대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국민의 정서 반응을 분석하였다(DfE, 2019). 이상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 문서를 수정하였으며, 최종 수정된 규정이 발표되는 과정을 거쳤다¹⁸⁾.

18) 영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 관계, 성교육 및 건강 교육 법정 지침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lationships-education-relationships-and-sex-education-rse-and-health-education\(2023.03.15. 인출\)](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lationships-education-relationships-and-sex-education-rse-and-health-education(2023.03.15. 인출))

다. 국민의견 수렴 원칙과 방법

영국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외에도 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때 국무조정실(the Cabinet office)이 배포한 행동강령에 기반하여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러한 행동강령은 교육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수행할 때 지녀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행동강령은 행정입법검토위원회(The secondary legislation scrutiny committee)의 권고를 바탕으로 대중들이 더 효과적으로 정부의 정책 수립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¹⁹⁾. 영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책 수립의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수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매체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문서를 가장 쉬운 언어로 간결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긴 문서를 최대한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피로도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여러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행동강령의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Cabinet Office, 2018).

- 의견 수렴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약어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질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꼭 필요한 질문만 하도록 질문개수를 제한한다. 이해하기 쉽고 답변하기 쉽게 만든다. 가능한 경우 긴 문서를 작성하지 말고 관련 주제가 있다면 병합하는 것을 고려한다. 정책 형성 과정에 의견 수렴에서 얻은 응답을 고려해야 한다.

- 의견 수렴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의견 수렴을 위한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아야 한다. 부서별 변호사에게 의견 수렴을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책 개발단계나 계획 단계에 있을 때 정책이나 정책 실행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이미 최종적인 결론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 의견 수렴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견 수렴 대상이 현안을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어떠한 비용과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영향 평가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상업이나 자원봉사 분야의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수 있다.

19) 영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 국민의견 수렴 안내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nsultation-principles-guidance>(2023.03.15. 인출)

- 의견 수렴은 정책 참여 과정의 일부분이다.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거나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비공식적이고 반복적인 의견 수렴도 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 의견 수렴 과정은 공식 문서 및 응답에 관한 것만은 아니며, 지속적인 과정으로 여겨져야 한다.

- 의견 수렴은 적정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 자문을 기반으로 해당 정책 제안의 성격과 영향을 고려하여 협상 기간을 판단해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것은 정책 개발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빨리 진행하면 응답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 의견 수렴은 목표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일반인, 사업체, 자선단체 등을 고려하고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적절한 경우라면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한다. 또한 이들이 의견 수렴에 대해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노인, 청소년, 장애인과 같은 특정 집단의 요구와 선호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 의견 수렴은 대상자를 고려해야 한다.

각각의 이해관계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선단체는 사업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의견 수렴이 휴일을 포함하는 경우, 미리 그 영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논의하거나, 협상 기간을 휴일 기간을 고려해 더 늘리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의견 수렴은 발표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새로운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경우,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공동의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의견 수렴 내용은 gov.uk(정부공식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한다.

- 의견 수렴은 대상자가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ov.uk의 의견 수렴 페이지에 대상자들의 응답을 게시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의견 수렴에 참여한 대상자들로부터 받은 응답과 이를 통해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그 수를 명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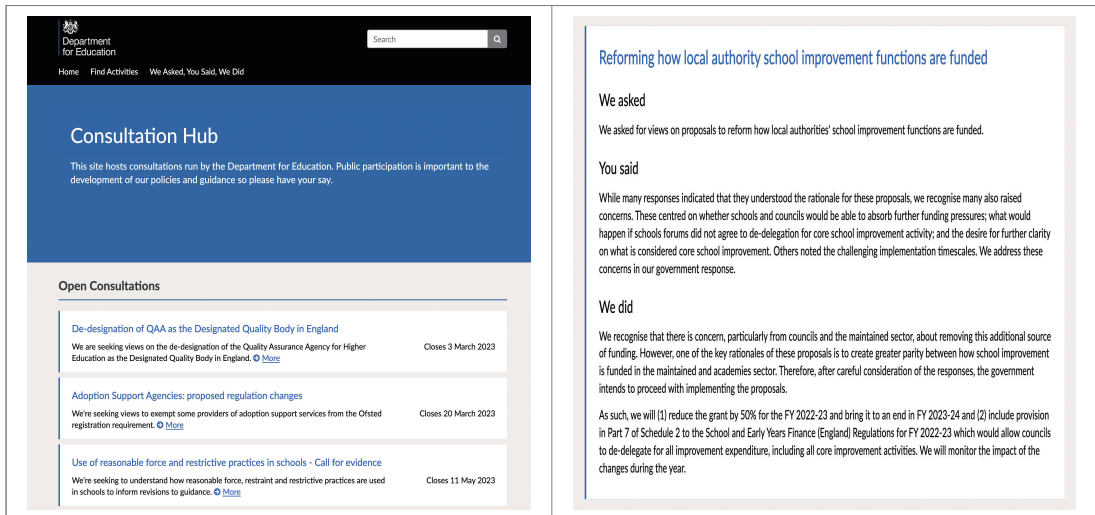
- 의견 수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적시에 발표되어야 한다.

의견 수렴에 대한 답변은 의견 수렴 종료 후 12주 이내에 발표되어야 하며, 기간 안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률 문서와 관련된 의견 수렴의 경우, 해당 문서가 제출되기 전 혹은 그와 동시에 정부의 답변서를 게시해야 한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빨리 답변을 발표해야 한다. 정책 및 법률 시행과 의견 수렴 종료 사이에 적절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 지방선거 또는 총선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의견 수렴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예를 들어, 공중 보건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서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는 국무조정실 내부의 적절성 및 윤리 부서(the Propriety and Ethics Team)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다른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이상의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의견 수렴 허브(Consultation Hub)를 운영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IV-1]과 같이 국민이 현재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교육정책 사안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모아 놓았다. 해당 정책을 선택하면 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간담회 정보, 관련 문서, 담당자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활동 찾기’ 탭을 활용하여 관심 키워드를 입력하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교육정책들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다.



[그림 IV-1] 영국 국민의견 수렴 시스템: 국민의견 허브

출처: Consultation Hub: [https://consult.education.gov.uk/\(2023.03.15. 인출\)](https://consult.education.gov.uk/(2023.03.15. 인출))

‘We Asked, You Said, We Did’ 탭에는 최근에 진행되었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 및 정리해 놓았다. 위의 [그림 IV-1]과 같이 ‘We asked’ 아래에 어떤 부분에 대해 국민의견을 요청했는지 간단하게 서술한다. 다음으로 ‘You said’ 아래에 국민의견을 요약 정리한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별다른 논쟁 사안이 없었다면 간단하게 대부분이 우호적이었다고 서술하며, 세부적인 부분에서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면 찬성 반대 의견을 적시하고 필요시 구체적인 통계 자료도 함께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We Did’ 아래에는 국민의견 수렴이 어떻게 교육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서술한다.

3 독일²⁰⁾

가. 교육행정체제

독일 기본법 제7조 및 입법관할에 관한 연방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문화 또는 학교에 관한 입법 및 행정은 그 관할권이 주(Länder)에 있다. 따라서 기본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학교에 관한 입법권 및 행정관할권은 주에서 행사한다. 이를 주의 문화자치권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독일의 교육행정 체제는 주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으며 주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독일의 연방적 전통은 교육제도가 주마다 상이하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 교육부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 KMK)를 상설하여 통일된 학교 제도를 위한 지침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이시우, 2007).

독일의 교육행정기관의 특징은 교육자치권((Bildungshoheit)을 가지고 있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부서가 교육 행정조직으로서 학교 감독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최상위 학교 감독청으로서 각 주의 교육부가 있다. 2단계 교육 행정조직을 갖는 브란덴부르크 주, 헤센 주, 니더작센 주, 작센-안할트 주,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등은 상급 행정조직으로서 주 교육부와 하급 행정조직으로서 지역 교육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바덴-뷔템베르크 주, 바이에른 주 등은 3단계 교육 행정조직을 갖는데, 최상위 학교 감독청으로서 주 교육부와 상위 학교 감독청으로서 주 행정관구(한 부서에서 학교와 교육 분과를 담당함)가 있고, 하위 학교 감독청으로서 지역 교육청이 있다(김봉철, 2015).

20) 독일 사례는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있는 강현민 선생님이 작성하였음

〈표 IV-2〉 바덴-뷔템베르크 주 교육행정기관

정부	교육행정기관	구분	관련 법령
주정부	주 교육부 (Kultusministerium)	최상위 학교감독청	BW주 학교법 제35조
	주 행정관구 (Regierungspräsidien)	상위 학교감독청	BW주 학교법 제34조 (김나지움, 직업학교, 국립특수학교, 기숙사 있는 교육상담센터)
	지역 교육청 (Staatliche Schulämter)	하위 학교감독청	BW주 학교법 제33조 (유치원, 초등학교, 직업레알슐레, 레알슐레, 하움 트슐레, 마인샤프트슐레, 특수학교, 교육상담센터)

출처: 바덴-뷔템베르크 주 교육부 홈페이지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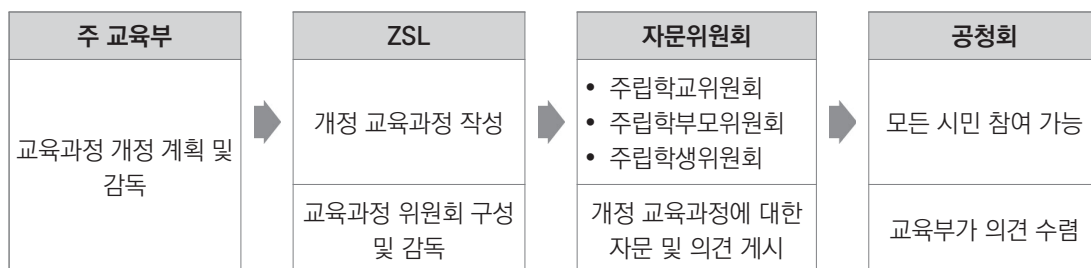
각 교육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 교육부(Kultusministerium)는 최상위 학교 감독청으로서, 학교 감독 관련 모든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주 행정관구에서 수행하는 장학 업무를 감독하며, 장학관 또는 장학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모든 종류 학교의 임무 및 규칙을 규정하고, 교육과정, 교과과정 및 수업 시수를 규정한다. 학교 입학 절차, 학년 승급 및 시험 규칙을 정하고, 다른 주의 졸업증을 인증하며, 교사 양성제도를 운용한다. 소속 기관(학교 교육의 질 및 교사 교육을 위한 센터, 바덴-뷔템베르크 주 교육분석기관 등)의 업무를 감독하며, 방학 및 휴교를 규정한다. 주 행정관구(Regierungspräsidien)에는 교육과 학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한다. 이 부서는 김나지움, 직업학교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소속 학교에 대한 감독업무,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감독업무, 교육위원회를 통한 수행사업에 대한 감독업무 및 소속된 지역 교육청에 대한 장학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대학 입학시험인 아비투어 및 기타 시험을 위한 조직을 관장하며, 공무원의 업무 및 학교법과 관련된 사항도 다룬다. 지역 교육청(Staatliche Schulämter)은 교육적 감독을 통해 과목과 교육에 관한 새로운 전문지식, 새 교육과제에 대한 준비, 학교 외부 협력 계획 및 조정 등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상담을 한다(황준성 외, 2011). 또한 지역 교육청은 초등학교, 레알슐레, 하움트슐레, 게마인샤프트슐레, 특수학교, 교육상담센터 등에 교사를 배치할 책임이 있으며, 학교장 또는 교직원에 대한 장학 업무와 학교에 지원, 상담, 동행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 교육청은 담당 지역의 교육 및 학교발전 영역에 책임이 있다.

21) [https://www.baden-wuerttemberg.de/de/startseite\(2023.02.25. 인출\)](https://www.baden-wuerttemberg.de/de/startseite(2023.02.25. 인출))

나. 교육과정 수립 및 개정 절차

독일은 각 주에서 독립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은 주 정부 내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나 직속 기관에서 담당한다. 예를 들어, 바덴-뷔템베르크주의 경우 학교 교육의 질 및 교사교육센터(Zentrum für Schulqualität und Lehrerbildung, 이하: ZSL)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ZSL은 주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서 모든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커리큘럼 및 교육 지원 자료를 통해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교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를 위해 ZSL은 학교 유형별 및 학교 유형을 포괄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조직하고 감독한다.

독일에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개정하는 절차는 주별로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대체로 주 교육부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바덴-뷔템베르크주에서는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계획을 세우면 직속 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작성하며, 이후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그림 IV-2] 바덴-뷔템베르크 주의 교육과정 수립 및 개정 절차

출처: 바덴-뷔템베르크 주 교육부 홈페이지 재구성²²⁾

구체적으로 주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직속 기관인 ZSL에서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교육과정을 작성한다. 교육과정위원회는 해당 교육과정이 대상으로 하는 학교 관련 전문가 또는 간 영역 전문가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를 포함하는 일반 학교 교육과정, 직업학교 교육과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등에 따라 다른 교육과정 위원회가 구성된다. 일부 주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튀링겐 주의 경우 2015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교육과 실제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

22) <https://www.baden-wuerttemberg.de/de/startseite>(2023.02.25. 인출)

가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 성격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한 바가 있다.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개정 교육과정은 별도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의견을 받는 단계를 거친다. 바덴-뷔템베르크 주의 경우, 이 자문위원회는 주립학교위원회, 주립학부모위원회, 주립학생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문위원회는 실제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로서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자문 및 의견 게시를 한다. 교육과정은 다양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교육학자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일부 주에서는 개별 학교가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는 단계를 거치기도 한다. 바덴-뷔템베르크 주의 경우, 2016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116개의 시범학교에서 다수의 교사가 참여하여 개정 교육과정을 실제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실천할 수 있는지 교사와 학생의 관점에서 피드백을 받고 수렴하였다.

이러한 의견이 수렴된 개정 교육과정이 작성된 후 대중에게 공개되고 대중 공개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바덴-뷔템베르크 주의 경우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개정 교육과정이 게시된다. 바덴-뷔템베르크 주에서도 2016년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 공청회는 2015년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되었으며, 교육과정 개정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였다. 교육부의 자문기구(공립학교 자문위원회, 학부모위원회, 학생위원회), 노동조합, 전문 협회 및 조합, 지역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교회, 종교단체, 상공회의소, 대학교 등 다양한 지역 단체 또는 시민으로부터 2,600개 이상의 온라인 의견 게시가 있었다. 온라인 공청회에 게시된 의견 중 20%는 협회 및 조직으로부터 나왔고, 18%는 학부모를 포함한 개인으로부터, 8%는 대학교에서 게시되었다. 다만 학교 건물이나 장비와 같이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의견은 채택될 수 없었으며, 주 교육부 장관 회의의 결정을 통해 전국 공통으로 규제되는 규정이나 지침 관련 의견도 채택되지 않았다²³⁾.

23) 바덴-뷔템베르크 주 교육부: [https://www.baden-wuerttemberg.de/de/startseite\(2023.02.25. 인출\)](https://www.baden-wuerttemberg.de/de/startseite(2023.02.25. 인출))

가. 교육행정체제

일본의 교육정책 입안과 시행 주체는 문부과학성이다. 아울러 사회적 요구에 맞게 개혁의 주제와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내각에 설치된 교육 관계 자문기구이며, 문부과학성에는 해당 기구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내각의 교육 관계 자문기구의 심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문부과학성으로 옮겨져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들어가며 필요한 경우 문부과학대신은 중앙교육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한다. 문부과학성 내에서는 이러한 자문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교육심의회는 자문 내용을 심의하여 ‘답신’의 형태로 제안하면 문부과학성이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제도 설계한다.

최근 일본의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각에 설치된 교육 관계 자문기관이다. 특히 ‘임시교육심의회’와 ‘교육재생실행회의’는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임시교육심의회는 임시교육심의회설치법에 근거하여 총리부에 설치된 것으로 총리의 자문 요청에 따라 조사·심의하는 행정기관이다. 임시교육심의회는 그동안 문부과학성이 주도해왔던 교육정책 입안을 총리 주도, 정치 주도로 변화시켰으며, 1990년대 교육개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교육재생실행회의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차에 이르는 제언²⁵⁾을 함으로써 교육개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본회의는 총리와 관방장관, 문부과학대신 및 2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본회의 아래 초중등교육실무단(주심 1명과 부심 2명은 본회의 전문가가 담당, 그 외 10명의 실무단 위원), 고등교육 실무단(주심 1명과 부심 2명은 본회의 전문가가 담당, 그 외 9명의 실무단 위원), 디지털화 태스크포스(초중등교육 실무단 3명, TF 위원 2명)를 두었으며 문부과학성 교육재생 회의담당실이 사무국을 맡고 있었다. 교육 재생실행 회의도 임시교육심의회처럼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서 총리와 내각에 주도권이 있는 형태였다. 다만 임시교육위원회 활동 당시에는 중앙교육심의회가 개최되지 않았지만 교육재생실행회의는 그 제언을 중심으로 문부과학성의 중앙교육심의회가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담당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문부과학성에 설치된 교육 관련 심의기관으로는 중앙교육심의회가 있다. ‘중앙교육심의회(中央教育審議會)’는 문부과학성조직령(文部科学省組織令) 제75조, 제76조에 따라 문부과학성 내

24) 일본 사례는 PSJ종합교육지원오피스의 김지영 선생님이 작성하였음

25) 총리 관저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headline/kyouikusaisei2013.html> (2013.3.15. 인출)

에 설치되는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관이다. 주요 소관 사무로는 문부과학대신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교육 진흥 및 생애 학습 추진을 위해 풍부한 인성을 갖춘 창조적 인재 육성의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생애 학습 기회 정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 문부과학대신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며, 그 밖에 법령에 의거하여 심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중앙교육심의회에는 교육제도분과회(教育制度分科會), 생애학습분과회(生涯學習分科會), 초등중등교육분과회(初等中等教育分科會), 대학분과회(大學分科會)의 4개 분과회를 두고 있으며 심의회 또는 분과회에는 필요에 따라 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초등중등교육분과회는 초중등교육 진흥 및 초중등교육 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학교보건, 학교안전 및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교육직원 양성, 자질 유지 및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직접 다루고 있다.

중앙교육심의회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임시위원(비상근), 전문 사항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문위원(비상근)을 둘 수 있다. 위원은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문부과학대신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재임 가능)이다. 임시위원은 해당 특별사항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전문위원은 해당 사항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문부과학대신이 임명하며 조사심의가 종료되면서 해임된다.²⁶⁾ 각 분과회의 위원은 중앙교육심의회 본회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여기에 임시위원을 추가하여 심의한다. 예를 들어 제 11기 중앙교육심의회 위원은 총 29명인데 이 중 14명의 위원이 초등중등교육분과회(2022년 6월 24일 발령)의 위원이며 여기에 임시위원 22명을 선임하였다. 또한 분과회 하위에 부회가 있는데 부회에 속하는 위원, 임시위원, 전문위원은 회장(분과회에 설치되는 부회는 분과회장)이 지명하며, 부회에는 부회장을 두어 해당 부회 위원은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중등교육분과회 하의 교육과정부회에는 28명의 위원이 있으며, 회장을 비롯해 총 7명의 본회의 위원이 포함되어 있다. 즉 중앙교육심의회 위원 29명 중 14명이 초등중등교육분과회에, 해당 14명 중 7명이 다시 교육과정부회에 소속되어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중앙교육심의회는 위원 또는 임시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의사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임시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또한 회의는 회장 선임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공개하게 되면 공평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자료와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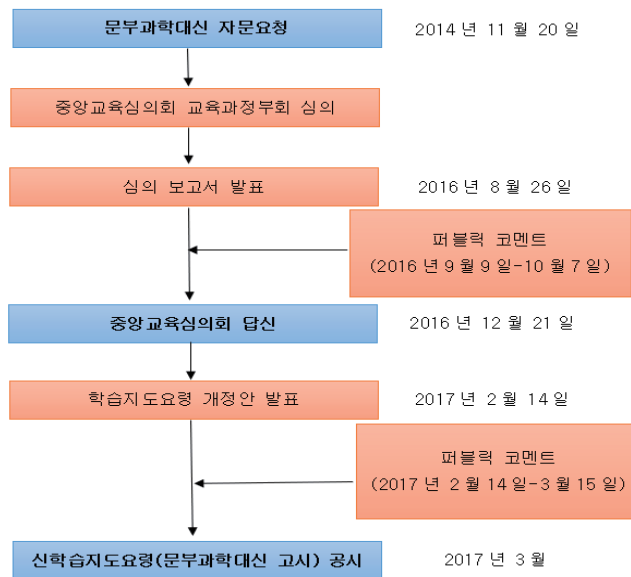
26)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0/gaiyou/05091501.htm (2013. 3.15. 인출)

나. 교육과정 수립 및 개정 절차

중앙교육심의회가 주기적으로 심의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인 학습지도 요령(学習指導要領 중앙교육심의회 초등중등교육분과회 교육과정부회에서 심의)이 있다. 대체로 10년을 주기로 개정하며 중앙교육심의회 교육과정부회가 2년 정도에 걸쳐 심의하여 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수립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은 문부과학대신이 중앙교육심의회에 자문²⁷⁾을 요청하고 중앙교육심의회에서 심의하여 문부과학대신에게 답신²⁸⁾하면 퍼블릭 코멘트를 거쳐 문부과학대신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퍼블릭 코멘트(パブリックコメント)는 행정 수속법 제38-제45조를 근거로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을 정할 때 미리 정책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30일 이상에 걸쳐 수집하는 제도이다. 국민은 전자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을 취합하여 법령 제·개정을 확정한다(김지영, 2020).

이상의 과정을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IV-3]과 같다.



[그림 IV-3] 학습지도요령 개정 과정

출처: 文部科学省ホームページ 学習指導要領「生きる力」 学習指導要領ができるまで 그림 인용(필자 재편집). https://www.mext.go.jp/a_menu/shotou/new-cs/idea/1304373.htm (2013.3.15. 인출)

27)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0/toushin/1353440.htm (2013년 3월 15일 인출)

28)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0/toushin/1380731.htm (2013년 3월 15일 인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11월 20일에 문부과학대신이 차기 초중등교육과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 해당일에 개최된 제95회 중앙교육심의회에서 자문서를 수교하였다. 이에 제7기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분과회(초중등교육의 기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는 2014년 12월 4일에 교육과정부회(초중등교육과정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에 ‘교육과정기획 특별부회(26명)’를 설치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합한 학습지도요령의 기본방침, 교과, 과목, 학습지도 방법, 평가 방법 등을 검토하였다(文部科学, 2015). 이후 교육과정기획 특별부회의 논의 내용은 교육과정부회에 보고되고 교직원들의 관련 의견을 추가하여 초중등교육분과회에 보고하였다. 교육과정기획 특별부회는 14회에 걸쳐 총 30시간 이상의 심의를 하여 유초중고별 전망을 정리하였으며, 2015년 8월 26일의 교육과정부회에서 문부과학성 사무국은 실무단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에 교육과정기획 특별부회에는 유아교육부회(22명), 초등학교부회(17명), 중학교부회, 고등학교부회(19명), 특별지원교육부회(20명)의 학교 단계별 부회와 총칙 평가특별부회(18명), 언어능력 향상에 관한 특별팀(16명), 고등학교 지리 역사 공민 과목에 관한 특별팀(22명), 고등학교 수학 과학에 걸친 탐구적 과목에 관한 특별팀(19명), 국어 WG(20명), 외국어 WG(15명), 사회, 지리 역사, 공민 WG(40명), 산수, 수학 WG(15명), 과학 WG(19명), 예술 WG(19명), 가정, 기술 가정 WG(16명), 정보 WG(16명), 체육, 보건체육, 건강, 안전 WG(24명), 생활,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WG(17명), 특별활동 WG(16명), 산업교육 WG(15명)의 교과별 실무단이 편성되어 학습지도요령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하기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文部科学省, 2015). 참고로 심의가 한창이던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각 실무단은 총 126회(261시간)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약 500명의 위원이 참여하였다.²⁹⁾

이후 2016년 4월 15일부터 교육과정기획 특별부회가 재개되어 2016년 8월에 교육과정기획 특별부회는 심의 보고서(안)를 마련하였다. 9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보고서(안)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관계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 12월에는 답신안을 마련하였다.

차기 학습지도요령의 방향성과 골자를 결정하는 교육과정기획특별부회 심의를 살펴보면 회의 진행은 주사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이 하지만 회의 내용은 사무국인 문부과학성이 준비하여 교육과정기획실장(사무국 핵심 실무자)이 회의 초반에 설명하는데 대체로 회의의 1/3 정도를 차지한다. 특별히 전문가의 사례 보고나 관계 단체 의견 청취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남은 시간 동안 사무국이 실무단의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제시한 내용에 대해 위원들이 의견교환을 하며 사무국은

29)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3/053/siryo/attach/1370949.htm (2013.3.15. 인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심의정리 안이나 답신안을 작성한다. 교육과정 기획특별부회의 심의내용은 상위 조직인 교육과정부회(교육과정기획실장이 보고), 초중등교육분과회(교육과정과장이 보고), 중앙교육심의회(초중등교육국장이 보고)에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공유되면서 최종적인 답신안이 마련되었다. 해당 답신안은 제109회(2016년 12월 21일) 중앙교육심의회의에서 승인된 다음 답신의 형태로 문부과학대신에게 전달되었다. 문부과학성은 이듬해인 2017년 2월 14일에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한 결과 총 11,210건의 의견이 모였다. 문부과학성은 항목별로 주요 의견(유치원 1건, 초등학교 77건, 중학교 57건, 고등학교 234건)에 대해 답변³⁰⁾을 하고 공개하였으며, 문부과학대신은 3월31일에 차기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하였다.

다. 특징

이상에서 일본의 교육정책 심의기구와 정책수립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의 어젠다와 방향성 수립에 있어 총리와 내각의 주도성 크다. 호리오(堀尾輝久, 2014)는 자민당의 교육재생실행본부(당시 본부장 시모무라 下村)의 제언(2012년 11월 21일)으로 '제2차 아베정권은 교육재생실행회의를 설치하고 실행본부안과 같은 취지의 제언을 정리(2013년 4월 15일)하고 문부과학대신이 된 시모무라가 이를 중앙교육심의회에 자문 요청하였으며 중앙교육심의회는 정부의 의향을 존중하는 답신(2013년 12월 13일)을 했다. 정부는 그것을 토대로 여당간에 협의하여 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심의에 붙이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타니구치(谷口聡, 2015) 또한 정책의 실행체제가 강력한 '중앙집권, 총동원형'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교육정책은 내각의 교육재생실행회의와 산업경쟁력회의가 주도하면서 자민당의 교육재생실행본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재무성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누키(佐貫浩, 2015)도 '자민당 안에 총리 주도로 교육재생실행본부를 두고 그 제언을 교육재생실행회의가 받아 그 내용의 대부분을 인계하는 형태로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문부과학성이 정책수립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교육심의회(전문가)의 역할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중앙교육심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주기적, 체계적, 안정적으로 교육정책과

30)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a_menu/shotou/new-cs/_icsFiles/afieldfile/2017/04/05/1383995.pdf (2013.3.15. 인출)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a_menu/shotou/new-cs/_icsFiles/afieldfile/2018/03/29/1403202_1.pdf (2013.3.15. 인출)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문’을 요청하는 원안 작성, 중앙교육심의회 위원 선임, 특별부회 설치, 심의회 초반에 심의회 시간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보고 및 설명, 심의회 논점정리, 답신안 작성 등은 모두 문부과학성 사무국이 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카와바타(川端) 전 문부과학대신은 인터뷰에서 중앙교육심의회에 대해 “한 번 점검을 해야 한다. 전부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문부과학성이 심의회 위원을 선임해서 결국은 문부과학성의 주장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³¹⁾

셋째, 퍼블릭 코멘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상술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에는 심의보고서(안) 발표와 답신 후 개정안 발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러나 30일 남짓이라는 기한이 짧고 퍼블릭 코멘트의 영향력이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2017년 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대학입학공통테스트’와 관련하여 실시한 퍼블릭 코멘트에서는 570건의 의견의 모였지만 문부과학성의 답변 결과 수정된 내용은 없었다. 문제는 퍼블릭 코멘트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문부과학성이 제대로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강행했다가 대학입학공통테스트와 관련해 가장 핵심이었던 ‘서술식 문제 도입’과 ‘영어 민간 검정시험의 도입’이 2019년에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후 2021년에는 최종적으로 도입을 단념한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해당 문제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경위 파악과 향후 대응을 위해 ‘대학입시에 관한 검토회의’를 설치하였는데 해당 검토회의 위원들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³²⁾

일본의 사례는 교육정책을 내각이 방향성을 잡고 문부과학성이 제도설계를 담당함으로써 시의에 맞는 주제를 신속하게 다룰 수 있고 강력한 추진력과 긴밀한 부처 간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교육의 중립성 확보와 교육전문가 및 다양한 주체의 의견 반영, 국민 여론 수렴 등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알려 준다.

31) 朝日新聞(2009.09.27.) 川端文科相にインタビュー

32)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ousa/koutou/103/gijiroku/mext_00148.html (2013.3.15. 인출)

5 모니터링단 역할 설정에 주는 시사점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관련 법령에 제시된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시행령 제10조 제6항에 따라 교육과정 수립·변경 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둘째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 셋째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이 그것이다. 모니터링단의 역할을 탐색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기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첫째 역할에 한정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육과정 개정 시 두 차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1차 의견 수렴은 교육과정 개정 내용에 관한 핵심 이해관계자(교사, 학부모, 전문가, 교과 관련 단체 등)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2차 의견 수렴은 교육과정 개정 계획이 구체화 되었을 때 이에 대해 일반국민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 범위 내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1차 의견 수렴 단계에서의 역할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의견 수렴 단계에서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사례 조사 국가와 차이가 있다. 한국 모니터링단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내 기구로 사전에 교과별, 학교급별, 내용별 대표성을 가진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되는 반면, 사례 조사 국가의 경우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는 기관이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가진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모니터링단 역할 설정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과 관련한 모니터링단 의견의 성격은 교육과정 개정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교 현장의 의견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한 1차 의견 조사는 초안 성격의 기본적 방향과 내용에 관한 핵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하며, 1차 의견을 반영한 보다 구체화된 계획에 대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 내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필요시 국민참여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니터링단 역할을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모니터링단 단원과 단장은 비상임으로 활동하게 된다. 비상임으로 활동하는 모니터링단 단장이 200명 수준의 모니터링단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다. 영국의 의견 수렴과 관련한 사항은 외부

조사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과 같이 모니터링단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지원하는 조직은 필요해 보이며, 국가교육위원회법 제21조에 따른 교육연구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니터링단 구성원으로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용 의견 조사지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19세 이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지보다 쉽고 간명하게 별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문항 수도 적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업무 추진을 위한 주요 절차 검토

- 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따른 업무 추진 방향 69
- ②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역할 탐색 70
- ③ 업무 추진 절차 및 주요 요소 검토 ... 77
- ④ 정책 제언: 후속 연구 추진의 필요성 .. 92

V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업무 추진을 위한 주요 절차 검토

1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따른 업무 추진 방향



[그림 V-1]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업무 추진 방향

국가교육위원회는 소수 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방식이 가진 한계,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부족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하였다. 자연스레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운영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는 기존의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 방향을 담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관련 조항에 제시된 소관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추구해야 할 가치(업무 추진 방향)를 탐색해보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과정 수립, 국민의견의 수렴·조정을 통한 소관 사무 추진,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업무 추진 과정의 대국민 공개 등이 도출된다(〈표 V-1〉 참고). 이들 가치들은 단순히 법률에 명시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된다기보다 실제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 반영되어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표방된 가치가 아닌 실현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에 대한 사무처리 절차를 검토함에 있어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구체화 하는데 초점을 둔다.

〈표 V-1〉 관계 법령에 제시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방향

관련 조항	내용	방향
법 제1조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 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합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중립성
법 제2조 제1항	사회적 합의 에 기반 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둔다.	사회적 합의 국민의견 수렴·조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5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것	국민 참여 투명성
시행령 제10조 제5항	국가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해야 한다.	투명성
시행령 제11조 제2항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 12조 제 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해야 한다.	전문성 투명성

2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역할 탐색³³⁾

종래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과 국가교육위원회 체제에서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발의 주체, 추진 기구, 개정 형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교육과정 수립·변경 권한은 교육부 만 가졌으며, 교육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는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교육과정 개정형태 면에서 볼 때 지난 2005년 교육부는 수시개정 체제를 공식발표 하였지만(교육부, 2005), 엄밀하게 말하자면 2007 개정 교육과정이나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거의 주기·전면 개정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고, 수시 개정은 이들 사이에 부분적인 개정 사항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즉, 주기·전면 교육과정 개정체제를 유지하며, 부분적인 수정·보완 사항을 수시개정의 형태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국가교육위원회 체제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부, 교육감 협의체, 국민이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정 방식에 있어 교육과정 개정 폭과 관계없이 수시로 반영해야 하는 수시(부분·전면)개정 체제로 전환되었다. 특히, 교육과정 변경 요청사항에 관해

33) 본 연구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에 관한 수용 여부 판단과 통보까지를 연구범위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연구·개발, 개발된 내용에 관한 심의·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종래에는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그 내용과 범위, 시기를 결정한 반면, 국가교육위원회 체제에서는 다양한 주체가 상시적으로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요청사항에 대해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모니터링단과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구체적인 사무처리 절차를 달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두 기구의 성격을 먼저 탐색해본다.

〈표 V-2〉 국가교육위원회 체제에서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

구분	내용
교육과정 개정 방식	- 상향식
교육과정 수립·변경 발의 권한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 수립·변경 발의 요청 권한	- 교육부 - 교육감 협의체 - 국민(20만 명 이상 동의)
기관·기구	• 법적 기구 - 국가교육위원회 -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 (필요시) 국민참여위원회
개정 형태	수시(부분·전면) 개정 체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역할 : 모니터링단 “의견”의 해석

요약 : 모니터링단 의견 해석

1. 국민의 의견
2.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현장(또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
3.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모니터링단의 의견

■ 법령에 명시된 모니터링단 역할

법령에 나타난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본 연구 범위인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이며, 둘째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는 것, 끝으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 중 시행령 제10조에 제시된 모니터링단 의견 제시의 의미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표 V-3〉 법령에 규정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역할

역 할	내 용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내용에 관한 의견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시	시행령 10조 제6항: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한 교육 과정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시행령 12조 제1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 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하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 지원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모니터링단”은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위촉·구성한 기구를 의미한다.

■ **교육과정 변경 요청 사안에 대한 “의견”의 해석**

현행 법령에는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듣도록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단 의견이 가진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재량권에 해당된다. FGD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모니터링단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 국민의 의견

모니터링단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효율적인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한 방안으로 모니터링단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때의 모니터링단 의견은 국민의 의견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2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현장의 의견(이해 관계자의 의견)

모니터링단 운영관련 법령에는 모니터링단의 구성을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로 교육정책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그룹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 면에서 볼 때 모니터링단의 의견이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현장의 의견,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3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모니터링단의 의견

시행령 제12조에는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역할로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모니터링단 역할을 제시한 것으로,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모니터링단의 의견”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외국사례 분석 결과와 FGD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의 의견은 두 번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현장의 의견’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외국의 경우 교육과정 수립·변경 과정에서 모니터링단과 같은 조직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대체로 2차에 걸쳐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중 1차 의견 수렴은 주요 이해관계자(교사 단체, 교과 단체, 학부모 단체 등)를 대상으로 하고, 1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 변경 계획이 수립되면 이후 일반국민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2차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외국의 1차 의견조사 단계에 가까우며, 이 경우 주요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첫 번째(국민의 의견), 세 번째(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모니터링단의 의견) 해석의 경우 의견 수렴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국민의 의견으로 보는 관점이다.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국민의견으로 볼 수 있지만 법 제16조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소관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대한 모니터링단의 의견은 좁은 의미에서는 주요 이해관계자 또는 학교현장의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국민의 의견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위원회 역할: 사전검토 의미 구체화

요약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 제시 방법은 다음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음

1. 심의·의결 사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위원 간 논의에서 도출된 전문적 판단을 기초로 사전검토 의견 제시
2.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필요시) 법 제19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조사·연구 결과를 종합한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

■ 법령에 명시된 전문위원회 역할

법령에 제시된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첫째,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하는 소관 사무에 관한 실무적인 자문과 둘째,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이다. 이중 실제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 역시 달리 설정될 수 있다.

역 할	내 용
국가교육위원회에 실무적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의견 제시	법 제17조: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내용에 관한 의견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시	시행령 제10조 6항: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교육과정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 의미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였을 시 전문위원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전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 하나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한 위원들 간 전문학적 판단을 중심으로 심의·의결 안건에 대해 검토하는 방안과 또 다른 방안은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법 제19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조사·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은 위원회는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에 대해 다양한 조사·연구 자료를 토대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것이며,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은 다양한 판단 자료 중 하나로 본다.** 둘째 방안에서의 사전검토 의견이란 전문위원회가 모니터링단의 의견 등 다양한 판단 근거를 토대로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 수용 시 장·단점, 문제점 등을 종합한 검토 의견으로 **심의·의결을 위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의미를 가진다.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국내 사례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자의 성격에 가깝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후자의 성격에 가깝게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FGD에서의 논의 결과 법령에는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자문’과 ‘사전검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은 위원회가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필요시: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

요약

국민참여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한 가지는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일에 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과정 수립·변경의 범위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국민참여위원회의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한 자문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한 자문은 국민참여위원회 소관사무에 포함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은 국민참여와 사회적 합의라는 것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해 필요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상정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관계법령에는 이를 구체화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수립에 있어서도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법 제16조 제2항에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해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회 회의,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민참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즉, 회의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에 관해서도 국민참여위원회가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구분	내용
국민참여위원회의 사무	법 제16조 제2항: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 ³⁴⁾ 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 을 수행한다.
주요 역할	법 제16조 제1항: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회의 소집 요건	시행령 제17조 제4항: 국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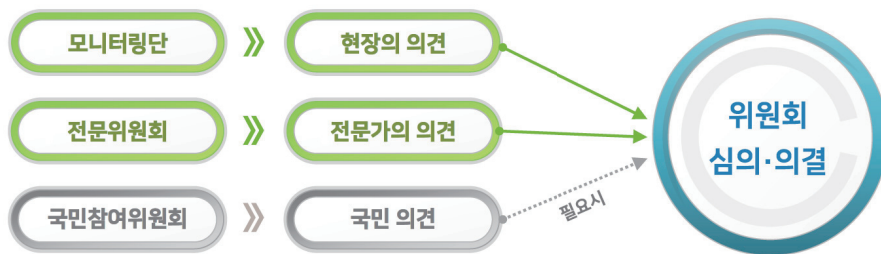
34) 법 제10조의 사무에는 본 연구의 대상인 국가교육과정 기준의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변경 요청 내용의 경중에 따라 필요시 국민참여위원회 의견 활용

시행령 제10조 제6항에 비취볼 때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참여위원회의 국민의견 수렴과 자문을 의무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국민참여위원회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에 관해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 자문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범위인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에 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의 전 과정 중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위원회의 국민의견 수렴 여부가 중요한 고려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변경요청 사항의 수용 여부 자체가 학교교육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요청 사항의 경중과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국민참여위원회에서의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함께 청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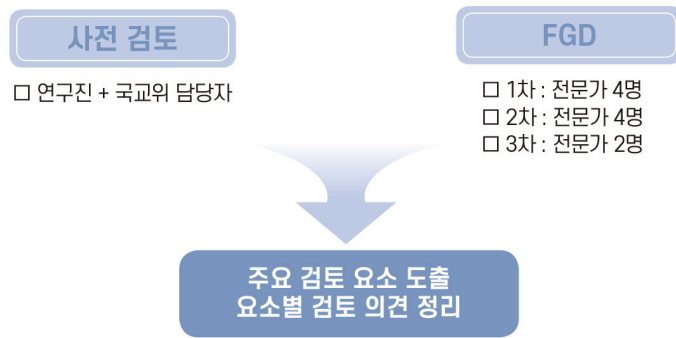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내용 관해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 필요시 국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들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의결하게 된다. 각 기구들의 역할에 비취 볼 때 모니터링단의 의견은 학교 현장의 의견으로,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은 전문가의 의견으로, 국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은 국민의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림 V-2]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관련 기구 의견 성격 종합

3 업무 추진 절차 및 주요 요소 검토

본 연구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업무 절차를 구안함에 있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실무 담당자와 법령의 의미를 해석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화하기 위해 3차례 사전검토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수립·변경 업무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초안을 기반으로 세 차례 FGD를 통해 보완하고, 향후 업무 추진 시 각 사안들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FGD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과정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공 영역별로 볼 때 교육과정 전문가 5명, 교육행정 전문가 2명, 학교현장 전문가 2명, 교육법 전문가 1명이 참여하였다.



세 차례 FGD를 통해 도출된 단계별 준비 및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변경 요청 접수 단계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권한 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과 반수의 동의), 국민(20만명 이상 동의)에게 있다. 이 중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협의체는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로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내용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의 경우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필요한 양식과 절차 등에 관한 안내와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국민이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하는 것에 따르는 준비 요소 및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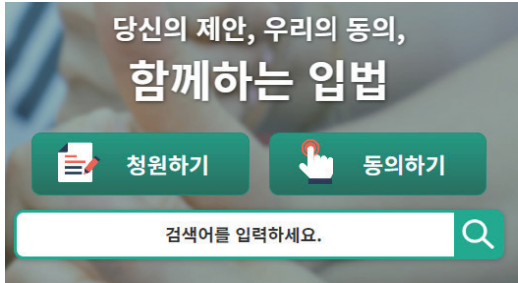
1-1: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국민이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시하고, 그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 시스템의 기능과 구성 또한 이에 맞춰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기준이 특정인의 중복 동의 등으로 왜곡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절차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동의청원」시스템 또는 지난 정부에서 운영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사례는 국민의견 제시에 기반한 정책 추진 시 홈페이지에 어떠한 기능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주요 기능³⁵⁾



35) 자료: <https://petitions.assembly.go.kr/>(2023.03.12.인출)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확인</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회원 로그인하기</p>  <p style="font-size: 8px;">통합국민은 국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공적자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 padding: 5px;">로그인</p> </div> <div style="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비회원 인증하기</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본인 인증</p> <p style="font-size: 8px;">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혹은 아이덴티티(PIN)으로 본인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 padding: 5px;">인증하기</p> </div> </div>	
본인 인증 후 동의	검색 기능

참고 사례: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당신의 제안, 우리의 동의, 함께하는 입법'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청원하기'와 '동의하기' 버튼을 배치하고,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검색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통계 현황'과 '검색어 현황' 탭이 있으며, '동의 진행 중' 섹션에서는 '최다 동의 순', '만료 임박 순', '최근 공개 순'으로 정렬된 청원 목록을 보여줍니다.

순번	주요 키워드	청원 제목	동의 수	진행률	기간	상태
HOT 01	국도/해양/교통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	15,129명	30%	2023-02-17 ~ 2023-03-19	D-7
HOT 02	보건의료	항암치료제 '엔허투'의 허투 저발현 유방암 환자에 대한	10,169명	20%	2023-02-14 ~ 2023-03-16	D-4
HOT 03	교육	학폭 가해자 처분 기준 개정 및 학폭 제도 개선에 관한 청	8,391명	16%	2023-02-28 ~ 2023-03-30	D-18

자료: [https://petitions.assembly.go.kr/\(2023.03.12.인출\)](https://petitions.assembly.go.kr/(2023.03.12.인출))

1-2: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내용 명료화

지난 정부에서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과 현재 국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동의청원」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설계 운영된 반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법」에 의거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법 제5조)”에 한해 청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관한 국민의 의견 제시는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내용 측면에서 볼 때 후자의 성격에 가깝다. 국민이 제안한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의 판단과 정책화는 국민이 작성한 내용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제안된 내용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경우 비록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정책화하는 과정에 제안자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안 목적과 취지를 교육과정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안내와 작성하기 용이한 형태의 양식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전문적이고 매우 구체적 사안과 내용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면, 국민참여에 기반한 교육과정 수립·변경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 준비 사항

○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서식 마련 시 주요 내용

- 제목, 제안 이유(취지)
- 수립·변경 요청 사항
 - 현행 교육과정과의 관련성(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 등 관련 부분)
 - 요청 사항: 삭제, 추가, 수정·보완 등
 - 적용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 작성 시 유의 사항 안내

- 비슷한 내용 제안 여부 사전 검색, 등록 후 수정 가능 여부 등

○ 작성 예시 공유

1-3: 수리 요건 확인 단계 설정 고려

현행 법령은 30일 이내 국민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건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수용여부를 심의·의결 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운영과 관련한 법령은 부재하다. 따라서 법령에 없는 수리 요건 확인 단계를 두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수리 요건 확인 단계를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제안한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낮을 경우 비록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사항이라도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교육과정 수립·변경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의 의견이 제안되었을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참고 사례: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원등록 → 30일 이내 100명 찬성 →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 → 공개 → 30일 이내 5만명 동의 → 청원접수 →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정부 이송

■ FGD 주요 내용

수리 요건 검토 단계 설정의 필요성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된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낮아 이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검토를 통해 제안자가 다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과 관련성이 매우 낮거나, 관련 없는 내용이 시스템에 게시될 경우 홈페이지 성격이 모호해 질 수 있으므로 요건 검토를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글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프로세스 필요 기심의·의결한 건과 동일한 또는 매우 유사한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이 반복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결과 통보를 간략히 하는 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격한 사전 절차를 둘수록 '국민참여'라는 취지를 살리기 어려움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사안에 대해 임의적·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나.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령에는 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에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문위원회 사전검토의 일반적 절차와 전문위원회 운영 방안 마련시 고려 사항들을 제시한다.

시행령 제1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1: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의 의견 수렴 순서

시행령 제10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면 두 가지 절차가 가능하다. 하나는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와 모니터링단의 의견 수렴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이며, 또 다른 방안은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고하여 전문위원회가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어떤 절차가 더 적절한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양한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건을 처리하는 경험이 축적된 이후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앞서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관련 기구의 성격을 논의함에 있어 모니터링단의 의견은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그 영향을 받는 학교 현장의 의견으로, 전문위원회의 의견은 사회적 환경,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한 전문가적 판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현재의 법령에는 전문위원회가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위원회가 심의·의결 전 사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을 내린다는 취지에 비춰볼 때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병행해서 진행하되, 필요시 전문위원회가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FGD 주요 내용

구분	장·단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 수렴 후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회가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판단의 경도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즉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상반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내기 어려움 • 의견 수렴 기간이 촉박해 질 수 있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병렬적으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단의 의견은 교육현장의 의견이며, 전문위원회의 의견은 사회적 영향 및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문적 의견이므로 위원회가 교육현장의 의견과 전문적 의견을 독립적으로 듣는 것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됨 • 상대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검토 시간 확보가 용이함 • 독립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되 필요시 전문위원회가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

2-2: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절차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위원회의 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사전검토 의미가 심의·의결 사안에 관한 전문가적 자문과 검토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회의 소집과 전문위원회 위원 간 관련 사항 논의와 정리 후 의견 제출이라는 일반적 회의 절차로 사전검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교육형발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와 같이 전문위원회가 사전검토를 진행할 때 필요시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내용과 관련 분야 관계자, 유관 분야 전문가의 추가적인 의견청취와 토론회 등을 거친 후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내용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회는 행정부서가 아닌 자문조직이라는 점에서 실무적인 연락, 회의 결과 기록 및 정리를 위한 지원 조직이 필요하며, 전문위원회 위원 중 한 명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직원 중 한 명을 간사로 두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분	내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 소집: 전문위원회 위원장 -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 공유 - 의견 수렴 방법 및 계획 수립(필요시)
2단계 (생략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검토를 위한 의견 청취(필요시) - 관련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 토론회 등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에 관한 사전검토 회의개최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검토 의견 제시: 전문위원회 위원장

2-3: 전문위원회 운영 방안 마련 시 고려사항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위원회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FGD에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FGD 내용

- 전문위원회(교육과정)의 경우 타 전문위원회와 달리 45명 이내로 구성됨. 전문위원의 전공 영역 등이 상이하므로 모든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관해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음(유사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 자문요청, 사전검토 등 사안의 내용에 따라 위원회 소집 범위를 달리 설정하여 운영하는 융통성 부여
-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내용의 성격에 따라 대면 회의 또는 서면을 통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는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즉,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과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전문위원회는 행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소집, 회의 내용 정리 등 실무적 지원을 위한 간사 또는 사무처 내 지원 조직 마련이 필요함

-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회의 개시에 필요한 성원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서 등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합의제 기관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으로 전문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과 사전검토라 할지라도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유사 사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필요시 전문위원회가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자체적인 조사·분석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 전문위원회 운영 방안 마련 시 고려사항

- 사전검토 방법(대면, 서면) 결정 주체에 관한 사항
-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간사 역할 및 실무 지원)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 전문위원회의 조사·분석,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연구 추진 등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 수렴

모니터링단의 구성은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³⁶⁾로 구성된다. 모니터링단의 단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 고시에는 모니터링단 운영 규모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교육위원회는 2023년에는 200명 규모로 시범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수의 모니터링단 단원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 방식 설계 → 의견 수렴 실시 → 결과 정리 → 의견서 작성 및 검토 → 의견 제출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6)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4호에는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사회 각계 인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이를 구체화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제4호에는 「5년 이상의 교육관련 경력이 있고 연구 활동 이력·교육과정 관련 업무 경력·교육과정 개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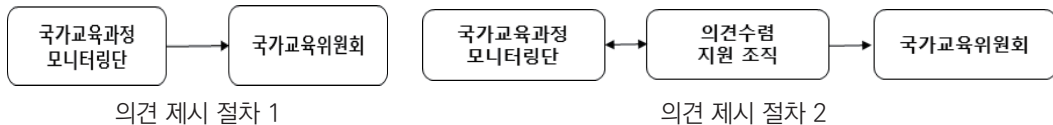
구분	내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수렴 설계 및 준비 -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대상 방법, 시기, 문항개발 등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수렴을 실시 - 설문조사, 면담 등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정리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검토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교육위원회 의견 제출



3-1: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 수렴 주체 및 지원조직

■ 내용

“국가교육위원회가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절차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법령에는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 1의 경우와 같이 모니터링단의 단장이 중심이 되어 단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단이 국가교육위원회 내의 행정조직이 아니라는 점, 단원 모두가 비상임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모니터링단이 자체적으로 조사 설계, 실시, 분석 등의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사례 2와 같이 모니터링단 의견 수렴을 지원하는 조직을 두어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외국 사례에서 영국이 의견 수렴 절차를 외부 전문가관에 위탁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이다. 이 경우 의견 수렴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나, 중간 조직이 생

김으로 인해 조사를 설계하고 분석을 주관하는 기관의 역할이 모니터링단의 역할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단 단장이 중심이 되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되, 교육연구센터,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담당부서가 지원 역할을 하는 형태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림 V-3] 모니터링단 의견 수렴 절차 및 지원조직

■ FGD 내용

- 모니터링단 단원 및 단장은 비상임으로 활동을 하게 되며, 단장 또는 특정 개인이 주도적으로 전체 모니터링단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 수렴 절차를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해보임. 현재로서는 국가교육위원회 내 부서, 법 제21조에 따른 교육연구센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음
-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이는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국한되어야 함
- 절차 2의 사례와 같이 의견 수렴이 진행될 경우 의견 수렴과정에서의 방법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지원 기관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음

- 모니터링단 내에도 전문가팀이 있으므로 의견 수렴 설계, 의견서 작성 및 검토, 결과 보고 등 전 과정에 있어 모니터링단이 중심이 되고 교육연구센터 등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함.

3-2: 의견 수렴 대상 및 범위 설정

■ 내용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내용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내용, 특정 학교급, 특정 교과에 적용되는 내용 등 다양한 형태로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모니터링단 의견의 성격에서 논의하였듯이,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일반 국민의 의견으로 또는 국민의 의견을 조사한 모니터링단의 의견으로 해석한다면, 모든 단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도 무방하다. 그러나 모니터링단 의견을 해당 교육과정을 실천하거나 적용받는 현장(이해관계자)의 성격으로 해석한다면,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FGD 결과 현행 법령에는 대상과 범위 설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 국가교육위원회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정 학교급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이라 할지라도 분석 과정에서 이를 배경 변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 수렴은 모니터링단 단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FGD 의견

- 법령에 의견 수렴 범위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회의, 모니터링단 단장 등의 결정에 의해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의견 수렴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를 생각한다면, 모든 사안에 대해 모든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함.
-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의 내용을 잘 모니터링단 단원이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 사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따라서 학교급, 교과 등을 구분하여 의견 수렴 대상을 한정할 필요는 없어 보임.
- 사안에 따라 의견 수렴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면, 관계 법령에 그 절차와 방법을 담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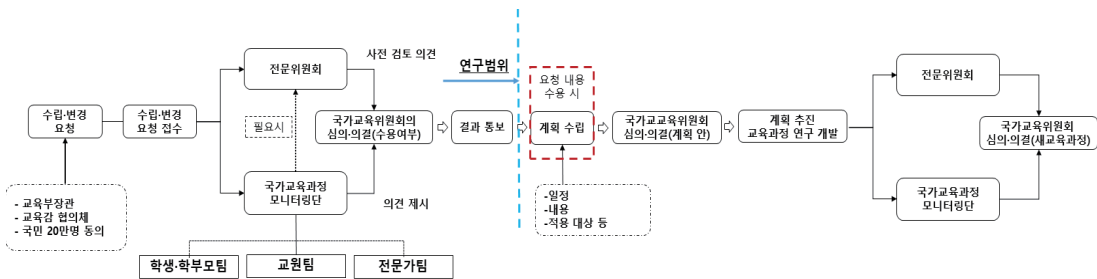
■ 의견 수렴과 관련한 법령 개정 시 고려사항

- 관계 법령: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사안에 따라 의견 수렴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 의견 수렴 대상 및 범위 설정 주체 명시
 - 위원회의 심의·의결, 전문위원회, 모니터링단 단장 등

라. 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

4-1: 심의·의결 및 결과 제시 방식: 수용여부, 반영 시기

FGD 결과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제안 주체에게 답변해주어야 할 핵심 요소는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와 “적용 시기” 두 가지로 도출 되었다. 제안자의 입장에 자신이 제안한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와 그 내용이 언제 반영될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 내(90일 + 60일) 교육과정 적용시기까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법령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추진 일정·내용 및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시행령 제10조 제4항)”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결과통보 이후 절차에 해당된다.



■ 수용 여부

수용 여부에 관한 통보는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등 세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수용	제안자의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경우
일부 수용	제안자의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내용 중 일부만 교육과정에 반영할 경우 ex) 전체 학교급 적용 → 특정 학교급 적용
불수용	제안자의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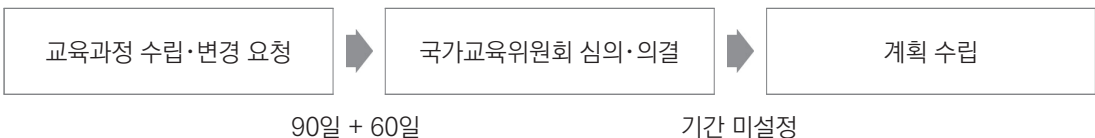
■ 적용 시기

교육과정 수립·변경 일정,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은 결과통보 이후의 절차라 할지라도 결과 통보 시 적용시기에 관한 정보를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권한을 준 의미를 충분히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한은 제시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대략적인 정보를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구분	내용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내 적용이 가능한 사안 • 연구·개발과정 없이 적용이 가능한 사안 • 학교 현장의 혼란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한 사안 등
단기 (1년 -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반영과 실행에 1-2년이 소요되는 사안 • 부분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 • 교과서 내용의 변경 등을 필요로 하는 사안
중기·장기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반영 및 실행에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 • 새로운 교과서의 개발 등과 같이 광범위한 연구·개발 과정이 필요한 사안

4-2.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내용의 추진 시기

현행법령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한 계획 수립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이 교육과정 개정 주기 면에서 수시 개정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변경요청 사안을 수용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일정한 기한 내 [계획 수립]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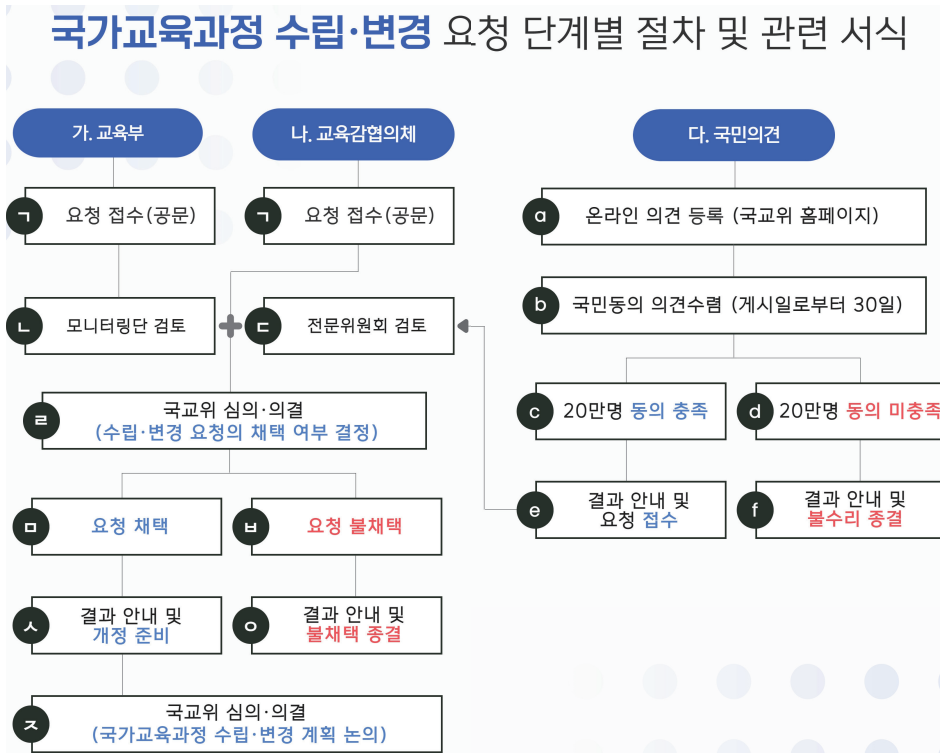


다만, 학교현장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단기간에 자주 바뀌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록 그 내용이 간단한 표현, 적용 방식의 변화라 할지라도 수시로 변경 내용이 학교 현장에 전달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 수립·변경요청이 빈번할 경우, 매번 그 사안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내 변경 결정 건에 대해서는 이를 종합하여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현장에 안내 및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에는 위원회가 계획 수립 및 적용 시기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의 국가·사회적으로 시급성 및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시급성과 중대성 정도가 높은 사안의 경우 즉시성에 중점을 두고 그렇지 않은 사안의 경우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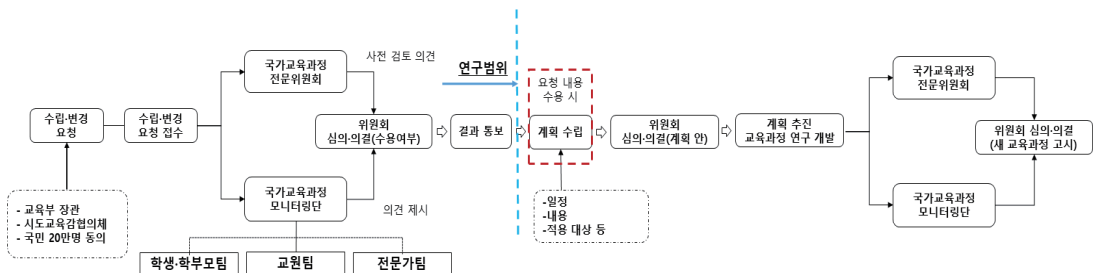
앞선 논의를 토대로 각 절차 진행에 있어 필요한 서식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서식의 예시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구분	내용	서식 적용 단계
서식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1~3호서식)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가-㉠ 나-㉠ 다-㉠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단] • (별지 제5호서식) 검토의견서(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 (별지 제7호서식)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검토 결과 보고 [전문위원회] • (별지 제6호서식) 검토의견서(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 (별지 제8호서식)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보고 	가-㉡ 나-㉡ 다-㉡ 가-㉢ 나-㉢ 다-㉢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9호서식)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서 	가-㉣ 나-㉣ 다-㉣
참고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10, 11호) 요청에 대한 국민의견 동의 결과 안내 • (별지 제12, 13호)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 안내 • (별지 제14호) 요청에 대한 처리 연장 안내 • (별지 제15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철회서 • (별지 제16호)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회의록 • (별지 제17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접수 대장 	다-㉤, ㉦ 가-㉥, 나-㉥, 다-㉥ 가-㉦, 나-㉦, 다-㉦

4 정책 제언: 후속 연구 추진의 필요성

이 연구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과 관련한 전체 과정 중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에 관해 위원회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까지를 연구범위로 삼고 있다. 이는 본 연구가 단기 과제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단계까지를 우선적으로 연구 범위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교육위원회 체제에서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은 기존 교육부 체제에서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교육과정 수립·변경 시기와 범위에 있어 교육과정 개정 폭과 관계없이 수시로 반영해야하는 수시(부분·전면)개정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도 교육부, 교육감 협의체, 국민(20만 명 이상 동의)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로 삼고 있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의 수립, 개발진의 구성과 운영, 상시적으로 접수되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안을 현장에 반영하는 주기의 설정, 최종적으로 위원회가 새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는 과정까지 그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다양한 주체들이 언제라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후속 연구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a).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1년 만에 드디어 통합 감독기구 탄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0. 8. 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b). 2020년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
- 교육부(2005).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2005. 2. 25일(화).
- 교육부(2021a).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논의 본격 착수: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 2021. 4. 20(화).
- 교육부(2021b). 2022년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진 2차 합동 워크숍. 2021. 12. 17.(금) 15:00~12.18.(토) 11:30.(장소: 대전유성호텔).
- 교육부(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의 목소리를 담다! 교육부 보도자료(2022. 8. 29.).
- 교육부(2023a).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국가교육위원회#undefined> (2023.3.3. 인출).
- 교육부(2023b).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7. 21.][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제정]. <https://www.law.go.kr/LSW/l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국가교육위원회#undefined> (2023.3.3.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2022). 2021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김봉철(2015). 독일에서의 국가교육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의 법적 거버넌스-학교교육에서의 국가의 교육고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15(2), 77-705.
- 김용(2012).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과 설립방안, 교육비평, 32, 142-151
- 김용일(2016).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 주장의 정당화 논리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3(4), 73-90
- 박선화, 정영근, 윤영순, 이근호, 김진규, 김차진, 김현숙, 노희방, 서용석, 황윤숙(2007). 국가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 방안 연구: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7-3.
- 방송통신위원회(2014. 10. 17.). 2014년 제46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서면브리핑.
- 방송통신위원회(202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행정기관위원회 활동내역서('23. 2월말 기준).
- 이시우(2007).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II)-독일-. 한국법제연구원.

- 정영근, 민용성, 이병천, 권점례(2021). **교육과정의 분산적 거버넌스에 대응한 연구·개발·보급(RDD) 체제에 관한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 21(20).647-670.
- 정영근, 민용성, 이병천, 권점례, 김사훈, 최중선, 김태호(2020). **국가교육과정 개발·적용·평가의 순환체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20-10.
- 하연섭(2023).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 교육기구 동향 조사**.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제3차 워크숍. 2023.2.27.(월) 14:00~17:00(장소: 포시즌스 호텔). 23-4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3). **교육과정 수시개선 체제 구축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년도 세미나 자료집, 연구자료 ORM 2003-20.<http://ncic.re.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jsessionid=98505E7511D1F38264DABA10C9E7EA39> (2023.3.6. 인출)
- 황준성, 현주, 김성기, 장덕호(2011). **교육지원청의 기능 개편 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황준성, 박균열, 김규식(20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Cabinet Office (2018). **Consultation principles: guidan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nsultation-principles-guidance>(2023.03.15. 인출).
- Department for Education (DfE). (2012). **The framework for the national curriculum: A report by the expert panel for the national curriculum review**.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2023.03.15. 인출).
- Department for Education (DfE). (2014).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framework for key stages 1 to 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curriculum-in-england-framework-for-key-stages-1-to-4/the-national-curriculum-in-england-framework-for-key-stages-1-to-4#the-school-curriculum-in-england>(2023.03.15. 인출).
- Department for Education (DfE). (2017a). **Changes to the teaching of 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 and PSHE: A call for evidence**. https://consult.education.gov.uk/life-skills/pshe-rse-call-for-evidence/supporting_documents/Sex%20and%20Relationships%20Education%20%20A%20call%20for%20evidence.pdf(2023.03.15. 인출).
- Department for Education (DfE). (2017b). **Help us learn more about how we can improve the teaching of 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 and PSHE: Young people's call for evidence**. https://consult.education.gov.uk/life-skills/pshe-rse-call-for-evidence/supporting_documents/Sex%20and%20Relationships%20Education%20%20Young%20peoples%20call%20for%20evidence.pdf

- Department for Education (DfE). (2018). **Relationships education,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and health education in England: Government consultation (including call for evidence response)**. https://consult.education.gov.uk/pshe/relationships-education-rse-health-education/supporting_documents/180718%20Consultation_call%20for%20evidence%20response_policy%20statement.pdf (2023.03.15. 인출).
- Department for Education (DfE). (2019). **Relationships Education,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and Health Education in England: Government consultation respons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80768/Government_Response_to_RSE_Consultation.pdf(2023.03.15. 인출).
- Department for Education (DfE). (2022). **Consolidated annual report and account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25417/DfE_consolidated_annual_report_and_accounts_2021_to_2022_accessible.pdf(2023.03.15. 인출).
- Gouvernement (n.d.) **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https://www.gouvernement.fr/le-ministere-de-l-education-nationale-de-la-jeunesse-et-des-sports> (2023.03.06 인출)
- legislation.gov.uk(n.d.). **Education Act 2002: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urriculum for England by order**.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2/32/section/87> (2023.03.18. 인출)
- legislation.gov.uk(n.d.). **Education Act 2002: Procedure for making certain orders and regulations**.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2/32/section/87> (2023.03.18. 인출)
-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fondation de l'école de la République du 8 juillet 2013
- MEJESR. (2020). **Conseil supérieur des programmes**. Rapport d'activité Janvier 2016-Décembre 2019.
- MENESR. (2015). **Synthèse des résultats de la consultation nationale sur les projets de programmes de l'école élémentaire et du collège : Résultats de l'enquête en ligne**.
- MENJ. (2022a, 04). **Charte relative à l'élaboration, à la mise en œuvre et au suivi des programmes d'enseignement ainsi qu'aux modalités d'évaluation des élèves dans**

- l'enseignement scolaire.** <https://www.education.gouv.fr/charte-relative-l-elaboration-la-mise-en-oeuvre-et-au-suivi-des-programmes-d-enseignement-ainsi-qu-5714> (2023.03.06 인출)
- MENJ. (2022b, 04). **Conseil supérieur des programmes : la composition des groupes chargés de l'élaboration des projets de programmes.** <https://www.education.gouv.fr/conseil-superieur-des-programmes-la-composition-des-groupes-charges-de-l-elaboration-des-projets-de-12167> (2023.03.19. 인출)
- MENJ. (2023a, 01). **Le conseil scientifique de l'éducation nationale, au service de la communauté éducative.** <https://www.education.gouv.fr/le-conseil-scientifique-de-l-education-nationale-au-service-de-la-communaute-educative-309492>. (2023.03.06 인출)
- MENJ. (2023b, 03). **Le conseil supérieur des programmes.** <https://www.education.gouv.fr/le-conseil-superieur-des-programmes-41570> (2023.03.06 인출)
- MENJ. (2023c, 03). **Les organismes consultatifs.** [https://www.education.gouv.fr/les-organismes-consultatifs-9314#Le_Conseil%20supérieur%20de%20l'éducation%20\(CSE\)](https://www.education.gouv.fr/les-organismes-consultatifs-9314#Le_Conseil%20supérieur%20de%20l'éducation%20(CSE)) (2023.03.06 인출)
- 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2018a). **NAHT Response to RSE/PSHE call for evidence.**
- Roberts N. (2021). **Briefing paper: The school curriculum in England.** House of Commons Library.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3/053/siryu/___icsFiles/afielddfile/2015/02/18/1354855_04.pdf](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SN06798/SN06798.pdf(2023.03.15. 인출).</p>
<p>文部科学省(2015.). 教育課程企画特別部会の設置について 中央教育審議会 初等中等教育分科会 教育課程部会 教育課程企画特別部会 第1回 資料4. <a href=) (2013.3.15. 인출)

- 文部科学省(2015). 次期学習指導要領改訂に向けた検討体制中央教育審議会 初等中等教育分科会 第100回 資料1 - 3. 2015.09.14. https://warp.ndl.go.jp/info:ndljp/pid/11293659/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3/siryo/_icsFiles/afieldfile/2015/11/17/1364305_005_1.pdf (2013.3.15 인출)
- 堀尾輝久(2014). 「安倍政権の教育政策 - その全体像と私たちの課題 - 」「法と民主主義」 第488号. pp.4-11
- 谷口聡(2015). 「現代における教育と教育行政の変容」『テキスト 教育と教育行政』勁草書房. pp.178-191
- 貫浩(2015). 「安倍『教育改革』の歴史的 성격、その手法と対抗の理論的枠組み - 対抗的教育改革の要件を考える - 」日本教育法学会年報 第44号. pp.5-21

프랑스 교육법

Articles L231-14 à L231-17 du Code de l'éducation

Articles D231-34 à D231-42 du Code de l'éducation

부 록

부록 ❶	유관기관 전문위원회 운영 관계 법령	101
부록 ❷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관련 양식	110

부록 1 | 유관기관 전문위원회 운영 관계 법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8. 4.〉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 7. 22., 2020. 8. 4.〉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방통위법)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방통위법 시행령)

제3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장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제2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3조(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전문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26.〉

제2조(구성) 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8.26.〉

1. 상임위원회 : 사회권전문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지역인권전문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개정 2020.7.10., 2021.3.12.〉
2. 침해구제제1위원회 :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3. 침해구제제2위원회 :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4. 차별시정위원회 : 차별시정전문위원회
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6. 아동권리위원회 :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신설 2017.6.13.〉
7. 군인권보호위원회 : 군인권전문위원회 〈신설 2022.6.20.〉

② 분야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4.3.31.>

③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4.3.31., 2017.6.13.>

1. 성차별, 장애차별 등 차별분야, 수사분야, 교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분야, 국제인권분야, 아동청소년인권분야, 지역인권분야, 북한인권분야, 군인권분야, 그 밖의 인권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개정 2017.6.13., 2020.7.10., 2021.3.12., 2022.6.20.>
2. 각 전문위원회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⑤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인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4.3.31.>

제2조의2(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0.7.10.>

1. 전문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조(특별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5인 내외로 특별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소속 특별전문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인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8.26., 2017.6.13.>

제4조(회의) ①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소위원회 및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②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의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3.23., 2017.6.13.>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과별·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4.3.31.><개정 2017.6.13.>

제5조(간사) 전문위원회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별로 간사를 둔다.

제6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한 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수당)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3.23.>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제24조(전문위원회)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9. 18.>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9. 18.>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2장 위원회 운영

제4조(안전의 사전검토) 위원장은 위원회 안전상정에 앞서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합동연석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석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합동연석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전문위원회

제9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다음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회
2. 지역혁신·마을공동체전문위원회
3. 지역산업·일자리전문위원회
4. 교육·복지전문위원회
5. 문화·관광전문위원회
6. 지역활력·공간정책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전문위원회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전문위원과 위촉직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전문위원은 관련부처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전문위원은 민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불구하고 전임 전문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위원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해당 전문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위원장이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사전에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직무)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전문위원회의 상정·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그 소관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조사

를 수행하고, 이에 관련되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2조(소관) ①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개편, 포괄보조금 합리화, 지역통계 기반구축 및 개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② 지역혁신·마을공동체전문위원회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중앙과 지방 및 혁신 주체 간 연계·소통,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한 자생적 혁신 역량 제고, 지방 주도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③ 지역산업·일자리전문위원회는 지역산업 육성, 지방투자촉진 방안 수립, 산업단지 혁신 성장 거점화 추진,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과학기술 진흥,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④ 교육·복지전문위원회는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역 간 보건복지의료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⑤ 문화·관광전문위원회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육성,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⑥ 지역활력·공간정책전문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운영,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 활성화,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촉진, 생태·환경 복원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⑦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나 새로운 과제에 대한 소관은 제13조의 운영협의회 등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협의회) 전문위원회의 연구·조사 사항에 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위원장과 기획단장으로 구성하는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요청자	이름	생년월일
	소속/직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접수를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의견 등록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 접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국가교육과정 개정 관련 의견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요청서 내용 사실관계 확인	1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관련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요청 접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검토 의견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검토	접수 번호	
요청 제목			

작성자	소속/직책	이름
-----	-------	----

의 건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의 타당성, 요청의 실현 가능성, 학교 현장을 고려한 효과성,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 중복 여부, 이해충돌의 가능성 등에 관한 의견 작성 바랍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단장 귀하

20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 ○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검토 의견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구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검토	접수 번호	
요청 제목			

작성자	소속/직책	이름
-----	-------	----

의견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의 타당성, 요청의 실현 가능성, 학교 현장을 고려한 효과성,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 중복 여부, 이해충돌의 가능성 등에 관한 의견 작성 바랍니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20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 ○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검토 결과 보고

I. 요청 개요

요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input type="checkbox"/> 시·도교육감협의체 <input type="checkbox"/> 국민의견
접수 번호	
제 목	
요 약	

II. 검토 기간 및 참여 현황

검토 기간	2000년 0월 0일 ~ 0월 0일				
모니터링단 검토 참여 현황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합계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III. 주요 의견

교원 의견
○

학생 의견
○

학부모 의견
○

교육전문가 의견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20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단장 ○ ○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보고

I. 요청 개요

요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input type="checkbox"/> 시·도교육감협의체 <input type="checkbox"/> 국민의견
접수 번호	
제 목	
요 약	

II. 검토 기간 및 참여 현황

검토 기간	2000년 0월 0일 ~ 0월 0일					
전문위원회 검토 참여 현황	총론	학교급	교과	교육일반	미래지향	합계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III. 주요 의견

<input type="checkbox"/> 총론 분과 의견 ○ <input type="checkbox"/> 학교급 분과 의견 ○ <input type="checkbox"/> 교과별 의견 ○ <input type="checkbox"/> 교육일반 및 미래지향 분과 의견 ○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20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장 ○ ○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서

국가교육위원회

의 결

안 건 번 호 제2000-00호

안 건 명

의결연월일 2000. 00. 00.

주 문

접수 번호 000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채택	불채택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년 00월 00일

위 원 장 ○ ○ ○

상임위원 ○ ○ ○

상임위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별지 제10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대한 국민의견 동의 결과 안내 (국민의견 20만명 동의 시)

국가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대한 국민의견 동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접수 번호	조사 기간	요청 일자	동의자(수)

국민의견 동의 결과

충족 미충족

귀하께서 요청하신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의견은 [국민의견 동의 조건]을 충족하여 후속 일정이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후속 일정이 확정대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국민의견 동의 조건]

* 의견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 충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국가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정책과 / ☎ 00-0000-0000)

별지 제11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대한 국민의견 동의 결과 안내

(국민의견 20만명 비동의 시)

국가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대한 국민의견 동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접수 번호	조사 기간	요청 일자	동의자(수)

국민의견 동의 결과

충족 미충족

귀하께서 요청하신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의견은 [국민의견 동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국민의견 동의 조건]

* 의견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 충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국가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정책과 / ☎ 00-0000-0000)

별지 제12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 안내 (교육부 및 교육감협의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제출하신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요청 제목			
심의·의결 일자			
심의·의결 결과	<input type="checkbox"/> 채택 <input type="checkbox"/> 불채택		
판단 취지			
문의처 (부서명/전화번호)			

별지 제13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 안내

(국민의견 온라인)

※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 시

국가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요청 제목			
심의·의결 일자			
심의·의결 결과	<input type="checkbox"/> 채택 <input type="checkbox"/> 불채택		
판단 취지			
문의처 (부서명/전화번호)			

별지 제14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 연장 안내

귀 기관이(또는 귀하가) 제출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 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번호	요청 일자
결과 안내 예정일	<변경 전> 20 . . (). → <변경 후> 20 . . ().
처리 연장 법령 근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 통보를 6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 사유	
문의처 (부서명/전화번호)	

별지 제15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철회서

(국민의견 온라인)

수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접수 번호		철회 요청 일자	
제목	에 관한 개정요청 철회서		
<p>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철회 시 국민동의 절차는 자동 종료됩니다.)</p>			
철회 사유			
철회에 동의합니까?	※ 동의 체크: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제출자	이름	(서명)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주소:	

별지 제16호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관련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일시	20 00.00.00.(), 00:00~00:00	장소	
참석자 명단			
<input type="checkbox"/> 안건 ○ <input type="checkbox"/> 주요 의견 ○			

